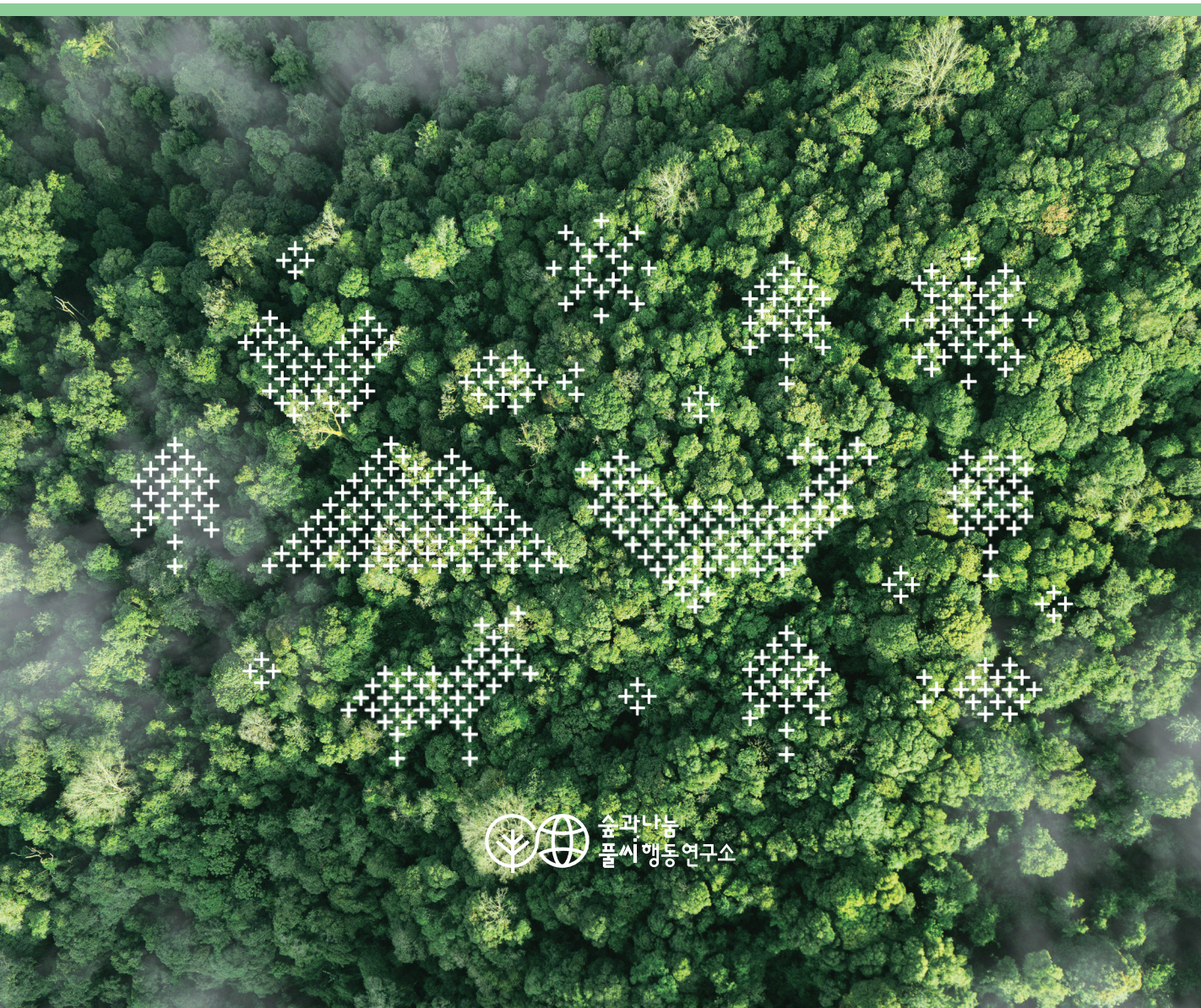
ISSUE PAPER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

- KDPA 2024 보호구역 데이터를 기준으로 -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ISSUE PAPER 2025-3호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

- KDPA 2024 보호지역 데이터를 기준으로 -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기관소개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는

가정·일터·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연구소입니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풀씨행동연구소는 (재)숲과나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갑니다.

주요사업

0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인재 양성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인재 양성 | ECOSEE
-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캠페인
- 담수생태계 복원 캠페인

02 그린아고라

- 〈삶을 위한 도시〉 포럼
- 자전거시민포럼
- 포럼 생명자유공동체
- 한반도청년환경포럼
- 오션포지티브(Ocean Positive) 포럼

03 전문 뉴스레터 SHE's View 발간

CONTENTS

발간사 04

요약 06

PART 1 들어가며 08
1. 지자체별 보호지역 현황 파악의 필요성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 범위 13
2) 연구 방법 15

PART 2 한국의 육상 보호지역 현황 18
1. 전국 육상 보호지역 지정 면적 및 비율 20
2. 주무부처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23
3. 보호지역 유형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29
4. 광역지자체별 보호지역 현황 32

1) 서울특별시 32	2) 부산광역시 36	3) 대구광역시 40
4) 인천광역시 44	5) 광주광역시 48	6) 대전광역시 51
7) 울산광역시 54	8) 세종특별자치시 57	9) 경기도 60
10) 강원특별자치도 64	11) 충청북도 68	12) 충청남도 72
13) 전북특별자치도 76	14) 전라남도 80	15) 경상북도 84
16) 경상남도 88	17) 제주특별자치도 92	

PART 3 제언 96
1. 지역별 불균형 완화 및 지역 맥락적 접근 강화 98
2. 보호지역 관리의 질적 향상 99
3. 지정·관리 부처의 역할 99
4. 시민사회의 역할 101

참고문헌 104

지자체가 자연을 바라보는 지도



생물다양성 위기는 기후위기와 함께 이 시대의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덜 훼손하자는 도의적 선언이 아니라,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다시 풍요로운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신뢰에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이 거대한 방향 전환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더많은자연"을 달성하기 위한 보호지역 확대나 생물다양성 전략은 중앙정부의 계획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역 단위에서의 실천'과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해집니다. 특히, 보호지역을 확대·지정하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기반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초적인 연구조차 수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각 지역이 어떤 자연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복원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보호지역 확대나 '30×30' 목표는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이번에 국내 보호지역 현황을 지자체 단위로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작성한 이슈페이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 지역이 스스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 토대입니다. "지역이 자연을 바라보는 지도"를 새로 그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 결과를 보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지역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26.9%에 달하는 보호지역을 보유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인천광역시 등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를 갖고 어느 지역이 '옳다'거나 '뒤처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자연·인구·개발 압력·경제 구조가 달라, 서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자신의 생태적 맥락 속에서 최적의 보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더많은자연"은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공공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지정이나 관리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생태 서비스 등의 형태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보상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2월

장재연 (재)숲과나눔 이사장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 이행을 위한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및 과제

풀씨행동연구소 | institute@koreashe.org

1. 목적과 범위

- 목적: 2030년까지 국토의 30% 보호(GBF 30×30) 달성과 지역 생물다양성전략(LBSAP,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3개소만 수립되어 있음)을 위한 지역 차원의 보호지역 현황 기초자료 제공
- 공간적 범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16개 기초지자체(해역 제외)
- 시간적 범위: 2024년 12월 26일(KDPA 데이터)
- 대상: 법정 28개 육상 보호지역 유형(5개 부처)
- 방법: KDPA 보호지역 경계와 SGIS 2024 센서스 행정경계를 QGIS 3.40.10에서 동일 좌표계(EPSG:5186)로 정규화. 이후 불일치 경계 보정을 위해 KDPA 보호지역 경계를 보호지역 유형별로 30m×30m 래스터로 변환 후 센서스 행정경계와 중첩, 그리고 지자체별 주무부처·보호지역 유형에 따른 면적 및 면적비 산출

2. 보호지역 지정 현황

- 전체 면적: 전국 육상 행정 면적 1,008.65만ha 중 176.67만ha(17.5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
- 면적비율 상위(광역): 강원특별자치도 26.94%, 경기도 23.61%, 충청북도 22.70%
- 면적비율 하위(광역): 세종특별자치시 0.76%, 인천광역시 2.92%, 충청남도 6.06%
- 주무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973,083.59ha, 산림청 737,247.01ha,
 국토교통부 701,985.34ha 등
- 보호지역 유형: 자연환경보전지역 6.68%, 국립공원 4.09%, 수원함양보호구역 3.03% 등

3. 시사점

- 지역별 불균형 완화 및 지역 맥락적 접근 강화: 지역 생태·경제·개발 압력 차이로 인한 불균형. 도시권의 보전 수단 부족. 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처럼 국토교통부 계열 규제 지정 비중이 큰 곳은 생태적 목적의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함.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보호지역 지정·관리 필요
- 보호지역 관리의 질적 향상 필요: 보호지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성과 관리의 실효성이 낮아 질적 관리 체계 재설계 필요
- 보호지역과 생태계는 행정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인접 지자체 간 공동 관리 체계 필수

PART 1

들어가며

들어가며

1. 지자체별 보호지역 현황 파악의 필요성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대신하는 새로운 글로벌 보전 목표(쿤밍 몬트리올 GBF)를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를 보전하기 위해 글로벌 보전지역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는 흔히 30x30 이라 표현된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30x30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학술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10년 6.2%에서 2018년 15.6%, 2022년 17.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2023).

하지만 30x30과 같은 국가적 비전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보호지역의 확대 지정과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와 실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의 관련 활동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LBSAP)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보호지역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 수단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을 지역적 맥락에 맞춰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표1.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연구 현황

지역	내용	이행기간	수립 여부	비고
경기도	제1차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2025~2029	전략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	2021~2025	전략 수립	
울산광역시	제1차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	2016~2020	전략 수립	2차 고시/공고 예정
서울특별시	제2차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22~2030	연구 실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7~2026	연구 실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8~2022	연구 실시	이행기간 경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9~2023	연구 실시	이행기간 경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9~2023	연구 실시	이행기간 경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7~2022	연구 실시	이행기간 경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7~2022	연구 실시	이행기간 경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7~2022	연구 실시	이행기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구	2017~2021	연구 실시	2차 고시/공고 예정
광주광역시			미수립	1차 고시/공고 예정
대전광역시			미수립	
대구광역시			미수립	
전북특별자치도			미수립	
전라남도			미수립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험이 있는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3곳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9곳은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정책적 전략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마저도 7곳은 이행기간 경과로 인해 지역생물성전략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5곳은 관련 전략 수립이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앙정부 중심의 보호지역 관리 체계이다. 1967년 지리산이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정 및 관리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에 따라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현황 자료 수집과 분석은 지자체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보호지역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과 같은 기초 자료 조회나 보호지역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다양하다는 점도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부처별로 보호지역의 지정 기준, 관리 지침, 자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로 2017년부터 매년 갱신되는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 관리 시스템(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일명 KDPA)이 있다. KDPA는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구축되었다. 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등 5개 부처에서 18개의 법률에 의해 지정된 총 28개 유형의 64,394개소 보호지역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KDPA, 2025). 하지만 KDPA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보호지역 지정 현황 파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풀씨행동연구소는 본 이슈페이퍼를 통해 전국 지자체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16개 기초지자체, 해역 제외)
- 시간적 범위: 2024년 12월
- 내용적 범위: 보호지역 28개 유형
 - 2024년 KDPA 보호지역 유형 분류 기준에 따라, 28개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을 정리하였다. 28개 보호지역의 주무부처, 지정권자, 근거 법령은 표2와 같다.
 - KDPA에서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 부처에 따라 내륙 습지보호지역(기후에너지환경부), 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 시·도 습지보호지역(지자체)의 3개로 세분하고 있다.
 - KDPA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경관과 해양생물로 세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육상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통합하였다.

표2. 대한민국 보호지역 유형(2024년 기준)(총 28개 유형)

주무부처 (유형 수)	유형	근거 법령
기후에너지 환경부 (13)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도립공원	「자연공원법」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기후에너지 환경부 (13)	야생생물 특별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내륙)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시·도)	「습지보전법」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지역	「수도법」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수산부 (4)	습지보호지역 (갯벌)	「습지보전법」
	해양보호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3)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천연보호지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명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청 (6)	백두대간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6)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	「산림보호법」
	경관보호지역	「산림보호법」
	재해방지 보호지역	「산림보호법」
	수원함양 보호지역	「산림보호법」
	생활환경 보호지역	「산림보호법」
국토교통부 (2)	도시자연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연구 방법

① 자료 수집

2024년 12월 KDPA(http://www.kdpa.kr)에서 제공하는 보호지역 경계 sh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였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행정경계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운영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sgis.kostat.go.kr)에서 2024년 센서스 행정경계 sh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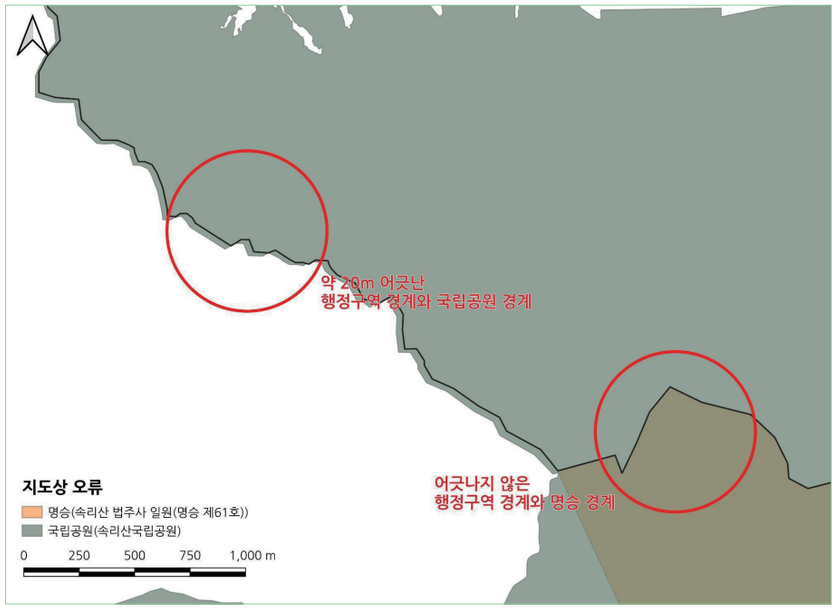
② 기초지자체별 육상 행정구역 면적

기초지자체별 육상 행정구역 면적은 센서스 행정경계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이때 시·도 센서스 경계와 시·군·구 센서스 경계의 면적 계산 결과가 다르게 산출되어, 시·군·구 센서스 행정경계를 육상 면적 산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QGIS 3.40.10을 사용하였다.

③ 기초지자체별 보호지역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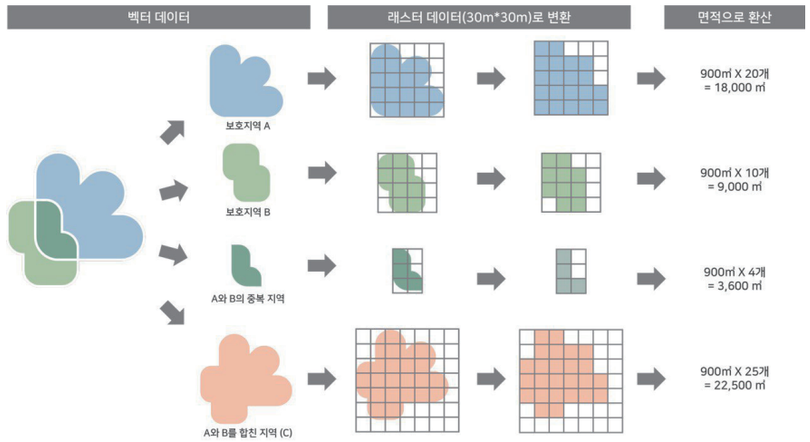
분석 과정에서 QGIS상에서의 좌표계를 일치(EPSG:5186)시켰음에도 보호지역 경계와 센서스 행정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다(그림1).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보호지역 경계 자료를 벡터에서 래스터(30m x 30m)로 변환하여, 센서스 행정경계와 중첩시켜 기초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 및 면적을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QGIS 3.40.10을 사용하였다.

그림1. 보호지역 경계와 센서스 행정경계 부분 불일치 사례(충주시와 상주시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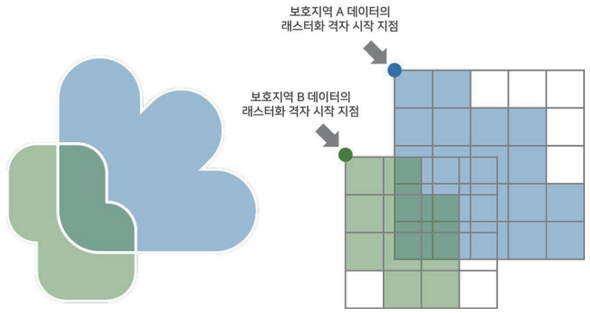
단, 이와 같은 산출 방식으로 인해 일부 면적에 대한 계산 편차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보호지역 A와 보호지역 B를 각각 래스터화하여 면적으로 환산하면, 각각 18,000㎡, 9,000㎡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A와 B 중복 지역의 면적도 3,600㎡로 산출된다. 하지만 A와 B를 합친 채(C) 같은 변환 과정을 거치면, 면적은 22,500㎡로 산출되며, 이는 앞서 도출한 보호지역 A의 면적(18,000㎡)과 보호지역 B의 면적(9,000㎡)에서 중복 지역의 면적(3,600㎡)을 뺀 23,400㎡과 상이한 결과이다.

그림2. 벡터 데이터의 래스터화에 따라 발생하는 면적 산출 편차



이와 같은 편차는 래스터화 과정에서 래스터화 격자 시작 지점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를 적용 및 활용할 때 이와 같은 편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3. 래스터화 격자 시작 지점의 차이



PART 2

한국의 육상 보호지역 현황

한국의 육상 보호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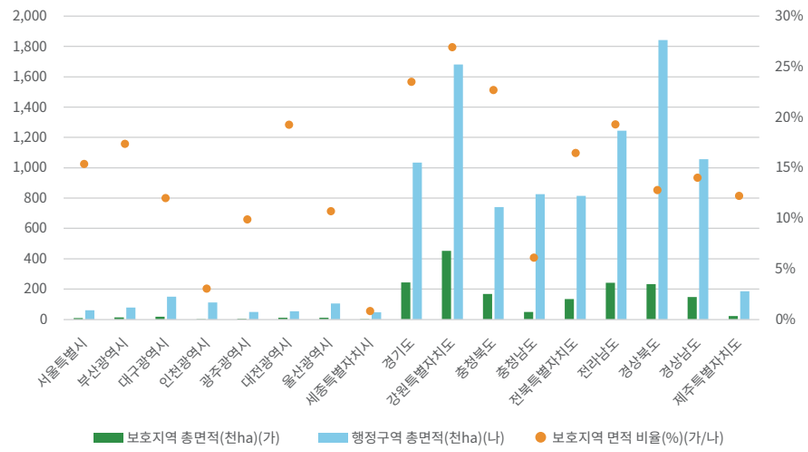
1. 전국 육상 보호지역 지정 면적 및 비율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국 육상 행정 면적의 10,086,460.23ha 중 1,766,716.13ha, 즉 17.5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광역지자체별 보호지역 총면적(단위: ha) 및 면적 비율(단위:%)

광역 지자체	보호지역 총면적 (중복 제외) (가)	행정구역 면적 (나)	비율 (가/나)
서울특별시	9,317.34	60,575.49	15.38
부산광역시	13,688.91	78,482.39	17.44
대구광역시	17,858.16	149,348.65	11.96
인천광역시	3,241.89	111,015.45	2.92
광주광역시	5,099.94	49,836.85	10.23
대전광역시	10,439.37	53,990.22	19.34
울산광역시	11,927.07	106,324.09	11.22
세종특별자치시	355.05	46,520.90	0.76
경기도	244,228.61	1,034,534.42	23.61
강원특별자치도	453,083.76	1,682,030.18	26.94
충청북도	168,309.72	741,404.80	22.70
충청남도	50,088.24	827,025.26	6.06
전북특별자치도	133,955.46	814,832.57	16.44
전라남도	240,884.64	1,245,150.84	19.35
경상북도	233,355.87	1,842,491.69	12.67
경상남도	148,118.49	1,056,280.37	14.02
제주특별자치도	22,763.61	186,616.04	12.20
전국	1,766,716.13	10,086,460.23	17.52

그림4. 광역지자체별 보호지역 면적 및 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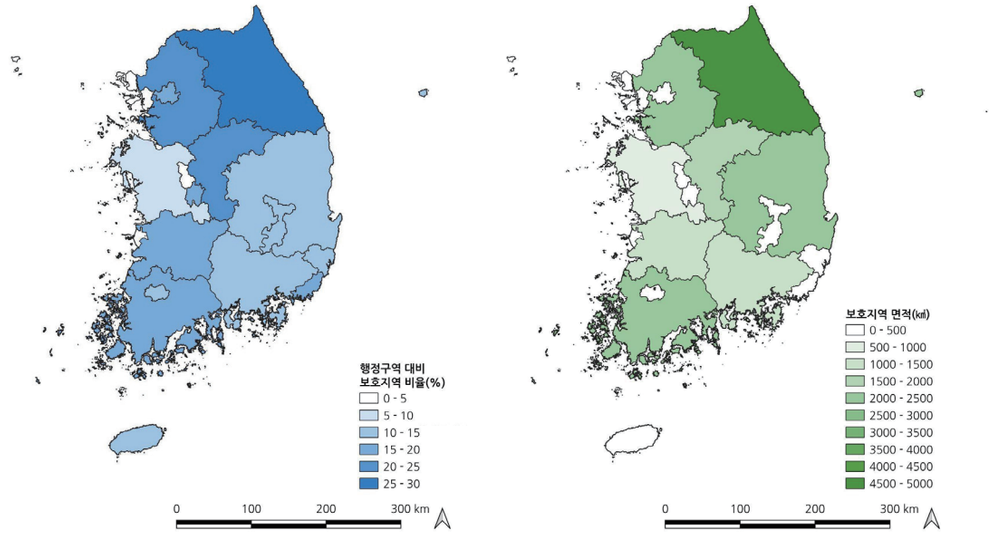
광역지자체 중 보호지역 총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453,083.76ha), 경기도(244,228.61ha), 전라남도(240,884.64ha)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총면적이 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355.05ha), 인천광역시(3,241.89ha), 광주광역시(5,099.94ha)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면적 대비 보호지역 지정 면적 비율이 높은 광역지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높은 보호지역 면적 비율(26.94%)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역인 지리적 특성상,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국립공원 등 대규모의 보호지역 지정

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경기도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23.61%)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충청북도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22.7%)도 월악산 국립공원, 속리산 국립공원 등 산악형 국립공원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이 비교적 높은 광역지자체에서는 보호지역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보호지역 지정 면적 비율이 낮은 광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0.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지자체에 비교적 최근 편입되었다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광역시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2.92%)도 높은 인구 밀도, 산업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도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5. 광역지자체별 행정구역 대비 보호지역 비율(왼쪽) 및 면적(오른쪽)



2. 주무부처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주무부처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의 육상 보호지역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주무부처별 육상 보호지역 면적(단위: ha)

광역 지자체	기후에너지 환경부(A)	해양수산부 (B)	국가유산청 (C)	산림청 (D)	국토교통부 (E)	계 (A+B+C+D+E)	계 (A+B+C+D+E – 중복 면적)
서울특별시	5,791.13	–	376.02	–	4,083.38	10,250.53	9,317.34
부산광역시	10,455.66	0.83	3,535.11	560.07	89.46	14,641.13	13,688.91
대구광역시	12,866.40	–	102.96	673.66	11,202.03	24,845.05	17,858.16
인천광역시	117.45	50.85	172.26	286.92	2,642.76	3,270.24	3,241.89
광주광역시	5,064.93	–	11.25	31.95	–	5,108.13	5,099.94
대전광역시	9,076.50	0.90	0.45	114.48	1,885.95	11,078.28	10,439.37
울산광역시	5,825.70	–	136.62	5,487.84	5,041.98	16,492.14	11,927.07
세종특별자치시	205.83	–	0.99	83.70	247.86	538.38	355.05
경기도	201,401.55	3,024.99	4,807.37	40,144.68	19,036.75	268,415.34	244,228.61
강원특별자치도	118,946.34	11,613.78	38,553.66	373,434.39	152,641.71	695,189.88	453,083.76
충청북도	129,283.29	1,957.47	2,235.15	62,915.76	88,024.95	284,416.62	168,309.72
충청남도	26,816.49	5,687.28	570.42	15,670.94	24,782.29	73,527.42	50,088.24
전북특별자치도	87,510.96	2,159.01	431.73	57,697.92	68,978.25	216,777.87	133,955.46
전라남도	114,768.09	111,874.83	6,689.25	23,712.64	99,779.76	356,824.57	240,884.64
경상북도	126,641.34	4,570.30	6,780.87	103,845.96	111,503.97	353,342.44	233,355.87
경상남도	102,023.82	12,438.81	4,796.86	51,144.21	91,043.46	261,447.16	148,118.49
제주특별자치도	16,288.11	38.07	10,390.50	1,441.89	21,000.78	49,159.35	22,763.61
전국	973,083.59	153,417.12	79,591.47	737,247.01	701,985.34	2,645,324.54	1,766,7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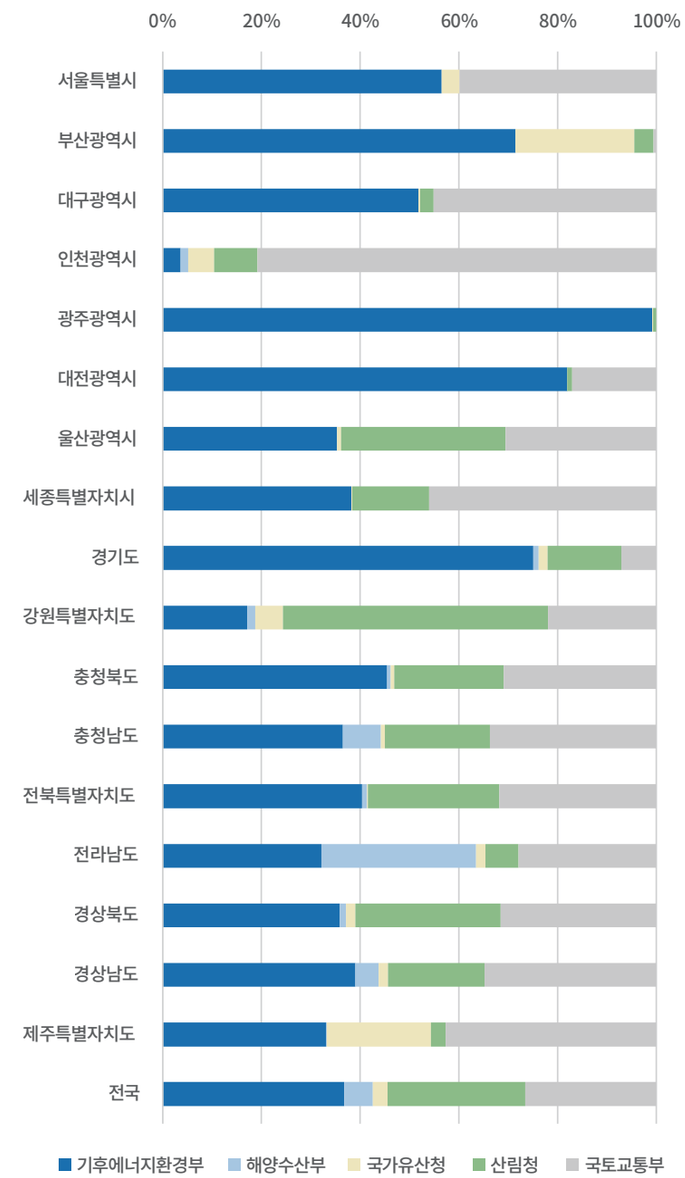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육상 보호지역 총면적은 중복된 면적 포함 시 2,645,324.54ha, 중복된 면적 제외 시 1,766,716.13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있는 보호지역의 면적은 973,083.59h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산림청(737,247.01ha), 국토교통부(701,985.34ha), 해양수산부(153,417.12ha), 국가유산청(79,591.47ha)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표5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6과 같다.

표5. 광역지자체에 따른 육상 보호지역 주무부처별 면적 비율(단위: %)

구분	기후에너지 환경부(A)	해양수산부 (B)	국가유산청 (C)	산림청 (D)	국토교통부 (E)	계 (A+B+C+D+E)	총면적 (A+B+C+D+E – 중복 면적)
서울특별시	62.15	–	4.04	–	43.83	110.02	100.00
부산광역시	76.38	0.01	25.82	4.09	0.65	106.96	100.00
대구광역시	72.05	–	0.58	3.77	62.73	139.12	100.00
인천광역시	3.62	1.57	5.31	8.85	81.52	100.87	100.00
광주광역시	99.31	–	0.22	0.63	–	100.16	100.00
대전광역시	86.94	0.01	0.00	1.10	18.07	106.12	100.00
울산광역시	48.84	–	1.15	46.01	42.27	138.27	100.00
세종특별자치시	57.97	–	0.28	23.57	69.81	151.63	100.00
경기도	82.46	1.24	1.97	16.44	7.79	109.90	100.00
강원특별자치도	26.25	2.56	8.51	82.42	33.69	153.44	100.00
충청북도	76.81	1.16	1.33	37.38	52.30	168.98	100.00
충청남도	53.54	11.35	1.14	31.29	49.48	146.80	100.00
전북특별자치도	65.33	1.61	0.32	43.07	51.49	161.83	100.00
전라남도	47.64	46.44	2.78	9.84	41.42	148.13	100.00
경상북도	54.27	1.96	2.91	44.50	47.78	151.42	100.00
경상남도	68.88	8.40	3.24	34.53	61.47	176.51	100.00
제주특별자치도	71.55	0.17	45.65	6.33	92.26	215.96	100.00
전국	55.08	8.68	4.51	41.73	39.73	149.73	100.00

그림6. 광역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서울특별시의 육상 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62.15%)와 국토교통부(43.83%)가 보호지역 면적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이나 해양수산부 소관 육상 보호지역이 전무한 것은 대규모 산림이나 해양이 없는 탓으로 판단된다.

부산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76.38%)의 비중이 매우 높고, 국가유산청(25.82%)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태종대, 금정산 등 부산의 주요 보호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와 접해 있으나 해양수산부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면적 비중은 낮다(0.01%).

대구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72.05%)와 국토교통부(62.73%) 소관 육상 보호지역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 소관 육상 보호지역은 전무하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81.52%)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육상 보호지역(3.62%)의 면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는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이 생태 보전보다 도시 개발 규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광주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99.31%)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광주광역시 보호지역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대규모 육상 보호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86.94%)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는 계룡산 국립공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육상 보호지역이 대전광역시 보호지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48.84%), 산림청(46.01%), 국토교통부(42.27%) 세 부처의 면적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중화학 등 산업 발전에 따른 도시 개발 규제와 더불어, 가지산, 대운산, 무룡산, 문수산 등 배후 산림 분포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교통부(69.81%)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 이는 신도시 건설과 함께 주변 지역의 관리를 위해 개발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탓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다음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57.97%)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82.46%)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산림청(16.44%)이 뒤를 잇는다. 이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 수계, DMZ 인근 생태 보전지역 등이 주된 보호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육상 보호지역은 산림청(82.42%)의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청 소관의 대규모 보호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76.81%)와 국토교통부(52.30%), 산림청(37.38%) 소관 순으로 육상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 높다. 이는 속리산 등 산림 분포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의 육상 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53.54%), 국토교통부(49.48%), 산림청(31.29%)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65.33%), 국토교통부(51.49%), 산림청(43.07%)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전라남도는 다도해와 넓은 갯벌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양수산부(46.44%) 소관 육상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상북도 육상 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54.27%), 국토교통부(47.78%)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경상남도 육상 보호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68.88%), 국토교통부(61.47%), 산림청(34.53%)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리산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이 분포하고 있으면서, 해안선을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개발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92.26%) 소관의 육상 보호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71.55%), 국가유산청(45.65%)이며, 이는 한라산 일대에 지정된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3. 보호지역 유형별 육상 보호지역 현황

보호지역 유형에 따라 전국 육상 보호지역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전국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 (ha)	행정구역 대비 면적 비율(%)	보호지역 면적(중복 제외) 대비 면적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412,876.05	4.09	23.37
	도립공원	60,890.90	0.60	3.45
	군립공원	25,118.20	0.25	1.42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2,658.15	0.03	0.15
	야생생물보호구역	99,526.79	0.99	5.63
	특정도서	862.29	0.01	0.05
	생태경관보전지역	24,509.28	0.24	1.39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755.66	0.04	0.21
	습지보호지역(내륙)	9,783.44	0.10	0.55
	습지보호지역(시·도)	223.51	0.00	0.01
	수변구역	118,924.57	1.18	6.73
	상수원보호구역	113,900.78	1.13	6.45
	특별대책지역	241,987.16	2.40	13.7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973,083.59	9.65	55.08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1,362.96	0.01	0.08
	해양보호구역	205.17	0.00	0.01
	환경보전해역	99,898.56	0.99	5.65
	수산자원보호구역	74,615.24	0.74	4.22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153,417.12	1.52	8.68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16,443.24	0.16	0.93
	천연보호구역	43,156.71	0.43	2.44
	명승	21,572.97	0.21	1.22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79,591.47	0.79	4.51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264,595.05	2.62	14.9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88,230.01	1.87	10.65
	경관보호구역	18,848.78	0.19	1.07
	재해방지보호구역	3,290.61	0.03	0.19
	수원함양보호구역	305,280.56	3.03	17.28
	생활환경보호구역	14.22	0.00	0.00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737,247.01	7.31	41.73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28,140.75	0.28	1.59
	자연환경보전지역	673,945.95	6.68	38.15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701,985.34	6.96	39.73
계(A+B+C+D+E)		2,645,324.54	26.23	149.73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766,716.13	17.52	100.00
행정구역 총면적		10,086,460.23	100.00	–

전국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자연환경보전지역 673,945.95ha, 국립공원 412,876.05ha, 수원함양보호구역 305,280.56ha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각 우리나라 행정구역 면적 6.68%, 4.09%, 3.03%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각각 우리나라 보호지역 전체 면적(중복 제외)의 38.15%, 23.37%, 17.28%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토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토지의 용도에 따라 4가지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폐율 최대 한도 20%, 용적률 최대 한도 80% 등의 행위제한만 존재한다. 다른 보호지역에 비해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규제 및 관리의 실효성이 낮다.

4. 광역지자체별 보호지역 현황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내에는 총 7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15.38%(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4,080.57ha, 행정구역의 6.74%)이다. 서울특별시 행정면적의 9.56%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호지역이며,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보호지역이 6.74%를 차지한다.

표7. 서울특별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3,759.48	6.21
	도립공원	–	–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1,015.53	1.68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486	0.80
	습지보호지역(내륙)	–	–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638.19	1.05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5,791.13	9.56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	–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0.99	0.00
	천연보호구역	–	–
	명승	374.22	0.62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376.02	0.62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경관보호구역	–	–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	–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	–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4,080.57	6.74
	자연환경보전지역	–	–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4,083.38	6.74
계(A+B+C+D+E)		10,250.53	16.92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9,317.34	15.38
행정구역 총면적		60,575.49	100.00

그림7. 서울특별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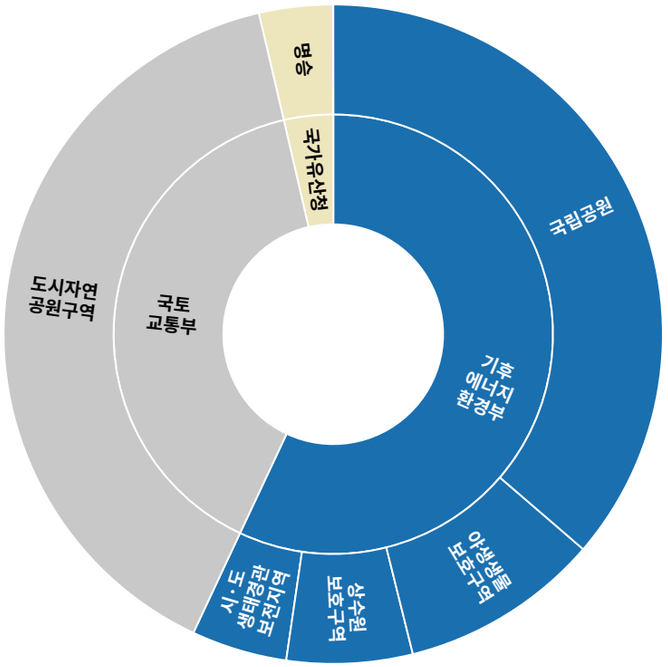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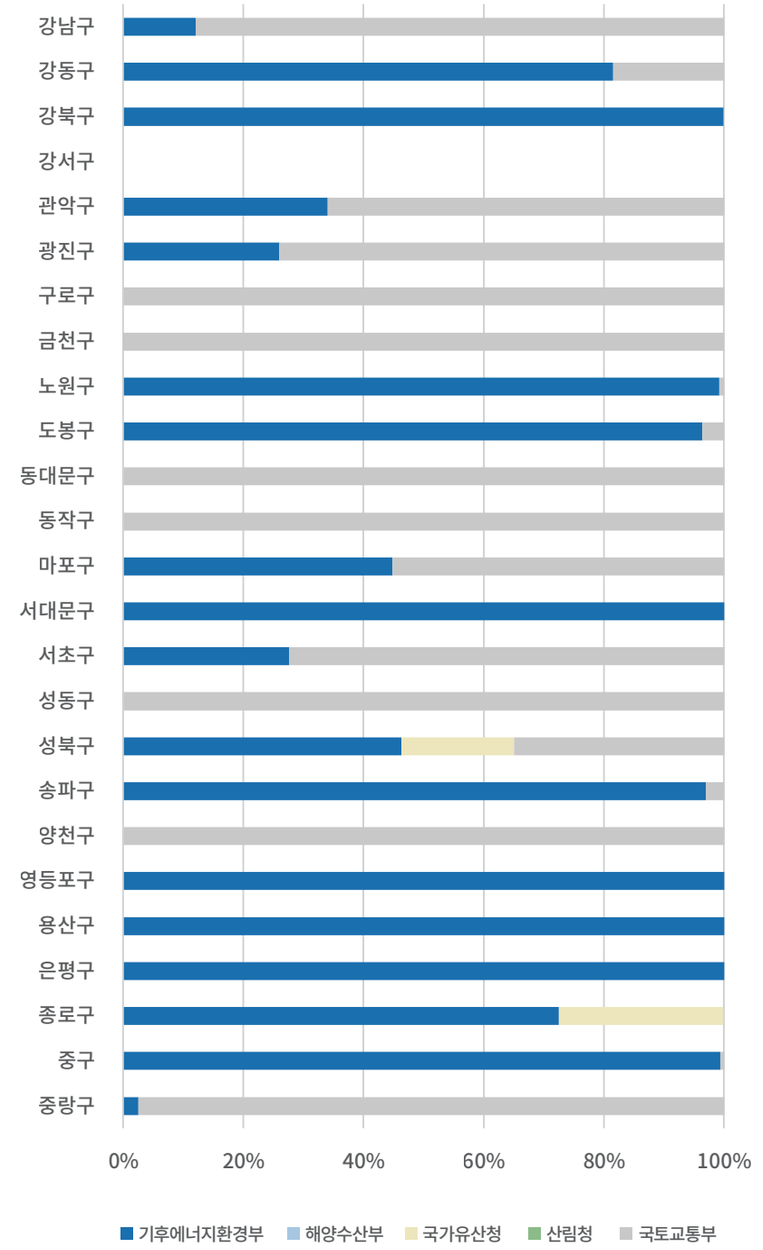


그림8.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내에는 총 10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17.44%(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상수원보호구역(7,915.69ha, 행정구역의 10.09%)이다. 부산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8. 부산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	–
	도립공원	–	–
	군립공원	1,640.25	2.09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	–
	특정도서	0.81	0.00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5.4	0.01
	습지보호지역(내륙)	895.5	1.14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7,915.69	10.09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0,455.66	13.32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0.72	0.00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0.83	0.00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3,367.26	4.29
	천연보호구역	–	–
	명승	167.49	0.21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3,535.11	4.50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60.07	0.71
	경관보호구역	–	–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	–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560.07	0.71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89.46	0.11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89.46	0.11
계(A+B+C+D+E)		14,641.13	18.66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3,688.91	17.44
행정구역 총면적		78,482.39	100.00

그림9. 부산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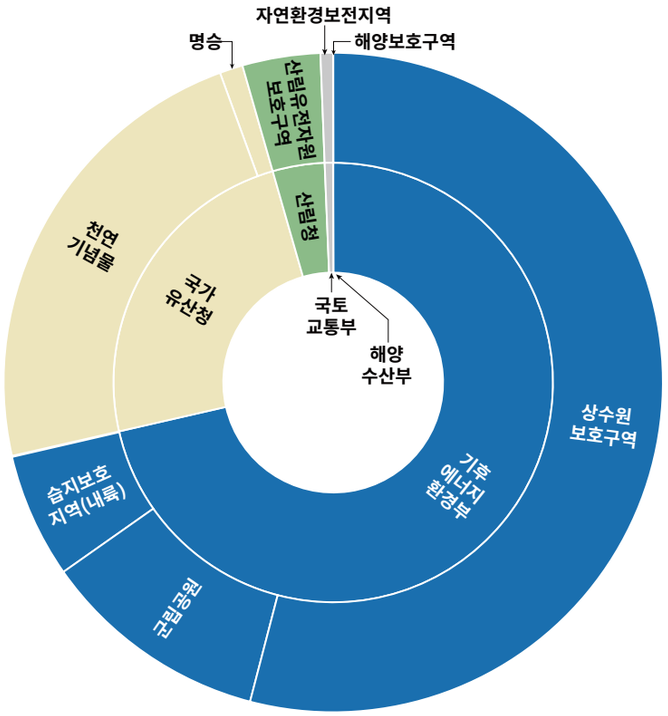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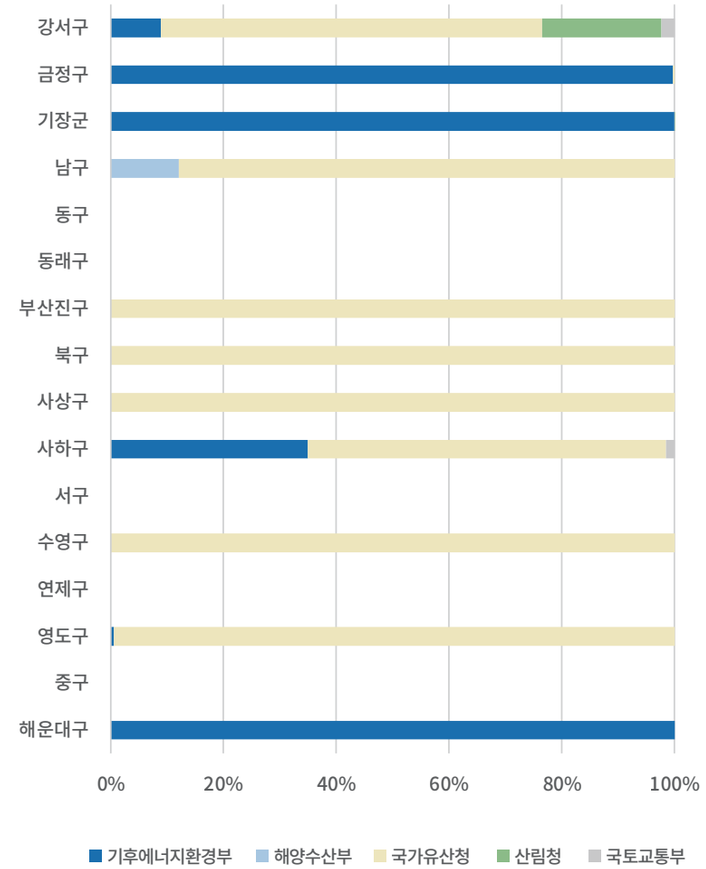


그림10.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내에는 총 11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11.96%(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7,090.65ha, 행정구역 면적의 4.75%)이다. 대구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9. 대구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5,627.61	3.77
	도립공원	–	–
	군립공원	1,271.70	0.85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341.37	0.23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	–
	습지보호지역(시·도)	14.58	0.01
	수변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5,658.21	3.79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2,866.40	8.62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	–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103.23	0.07
	천연보호구역	–	–
	명승	–	–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102.96	0.07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8.37	0.01
	경관보호구역	0.81	0.00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656.37	0.44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673.66	0.45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4,113.45	2.75
	자연환경보전지역	7,090.65	4.75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11,202.03	7.50
계(A+B+C+D+E)		24,845.05	16.64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7,858.16	11.96
행정구역 총면적		149,348.65	100.00

그림11. 대구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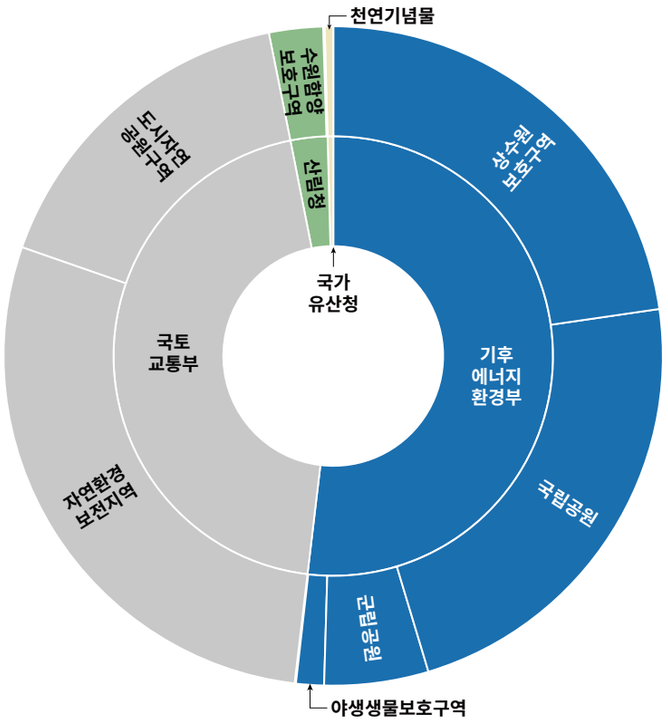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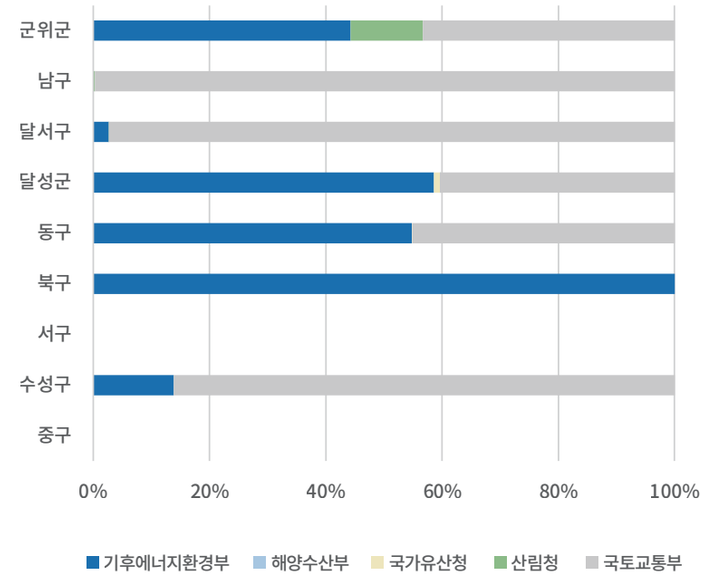


그림12. 대구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에는 총 13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2.92%(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2,635.83ha, 행정구역 면적의 2.37%)이다. 인천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0. 인천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	–
	도립공원	–	–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37.71	0.03
	특정도서	50.67	0.05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20.7	0.02
	습지보호지역(시·도)	9.84	0.01
	수변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	–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17.45	0.11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29.97	0.03
	해양보호구역	19.89	0.02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50.85	0.05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98.01	0.09
	천연보호구역	–	–
	명승	74.34	0.07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172.26	0.16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62.64	0.06
	경관보호구역	26.37	0.02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226.8	0.20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286.92	0.26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2,635.83	2.37
	자연환경보전지역	4.05	0.00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2,642.76	2.38
계(A+B+C+D+E)		3,270.24	2.95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3,241.89	2.92
행정구역 총면적		111,015.45	100.00

그림13. 인천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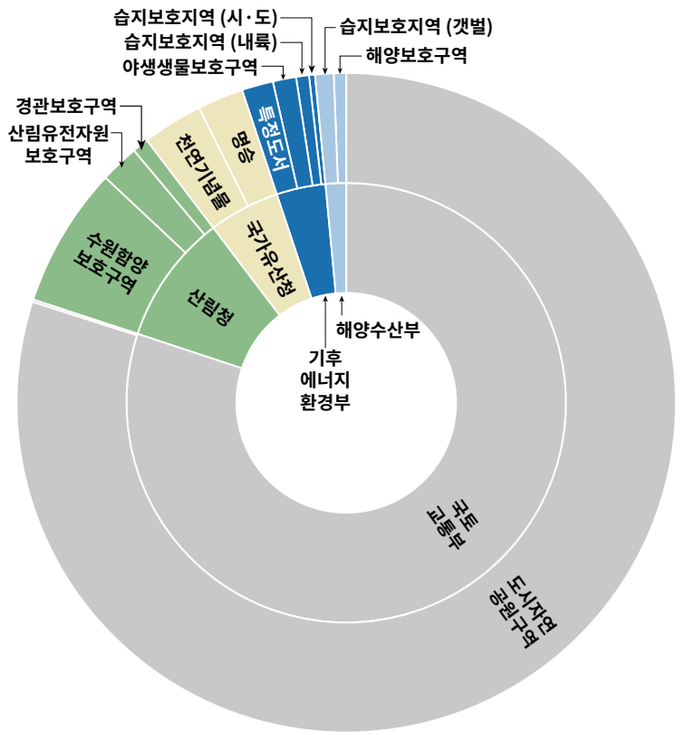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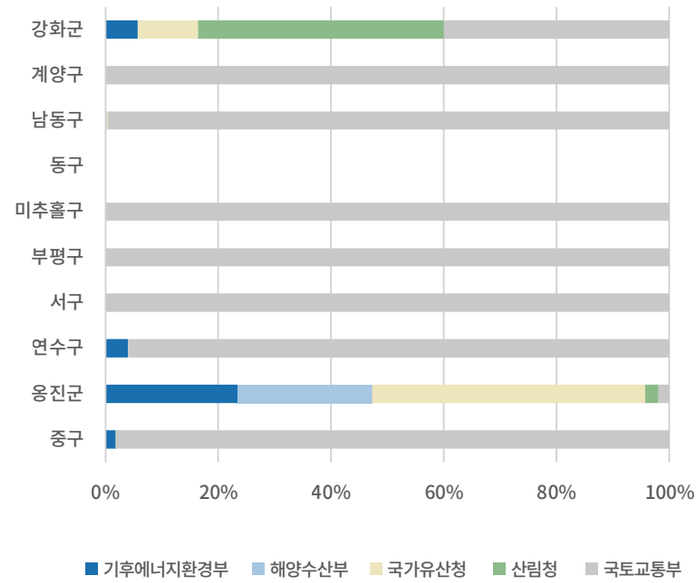


그림14.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내에는 총 7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10.23%(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국립공원(4,742.73ha, 행정구역 면적의 9.52%)이다. 광주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1. 광주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4,742.73	9.52
	도립공원	–	–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238.05	0.48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292.77	0.59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1,252.35	2.51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5,064.93	10.16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	–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8.10	0.02
	천연보호구역	–	–
	명승	2.70	0.01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11.25	0.02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1.95	0.06
	경관보호구역	–	–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	–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31.95	0.06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	–
계(A+B+C+D+E)		5,108.13	10.25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5,099.94	10.23
행정구역 총면적		49,836.85	100.00

그림15. 광주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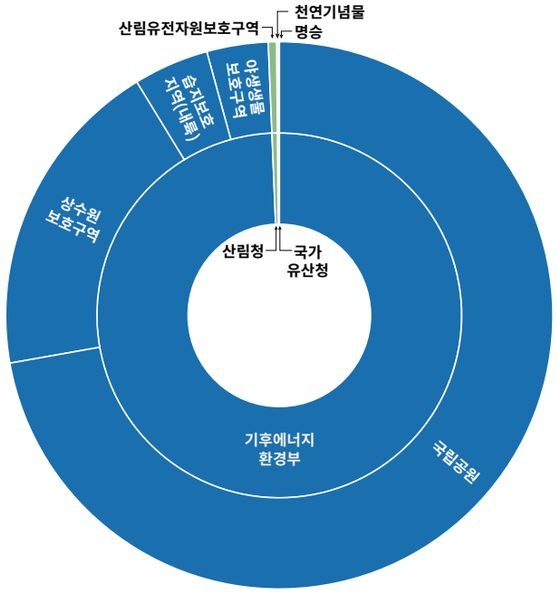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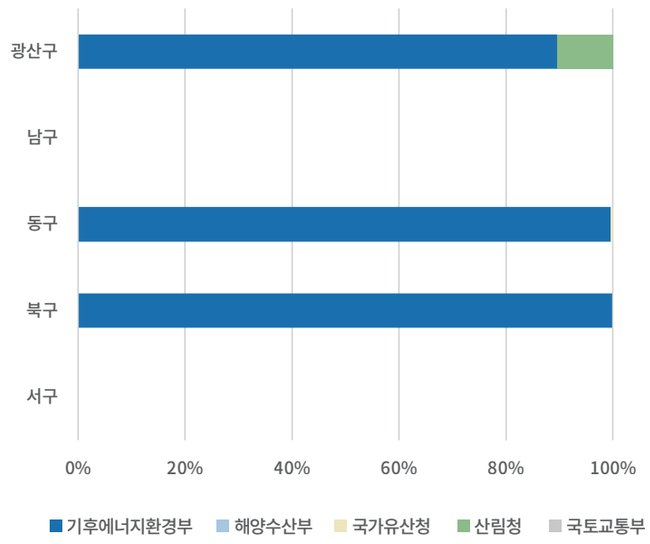


그림16. 광주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내에는 총 14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19.34%(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상수원보호구역(7,815.15ha, 행정구역의 14.48%)이다. 대전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2. 대전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777.96	1.44
	도립공원	–	–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685.72	1.27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89.91	0.17
	습지보호지역(시·도)	35.55	0.07
	수변구역	138.60	0.26
	상수원보호구역	7,815.15	14.48
	특별대책지역	6,346.71	11.76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9,076.50	16.81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1.35	0.00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0.90	0.00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0.36	0.00
	천연보호구역	–	–
	명승	–	–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0.45	0.00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64	0.02
	경관보호구역	82.11	0.15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24.21	0.04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114.48	0.21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1,250.01	2.32
	자연환경보전지역	636.60	1.18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1,885.95	3.49
계(A+B+C+D+E)		11,078.28	20.52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0,439.37	19.34
행정구역 총면적		53,990.22	100.00

그림17. 대전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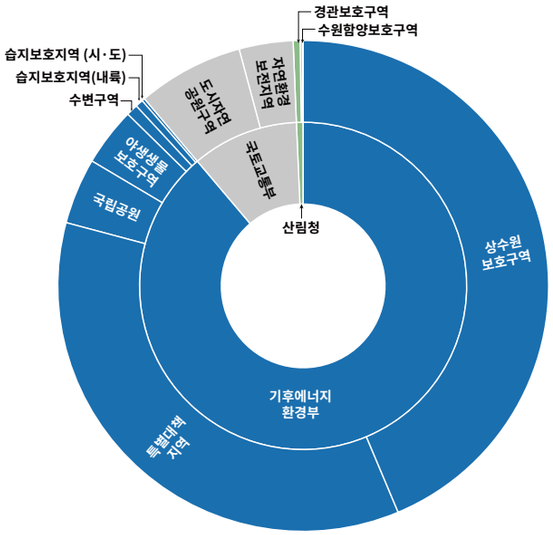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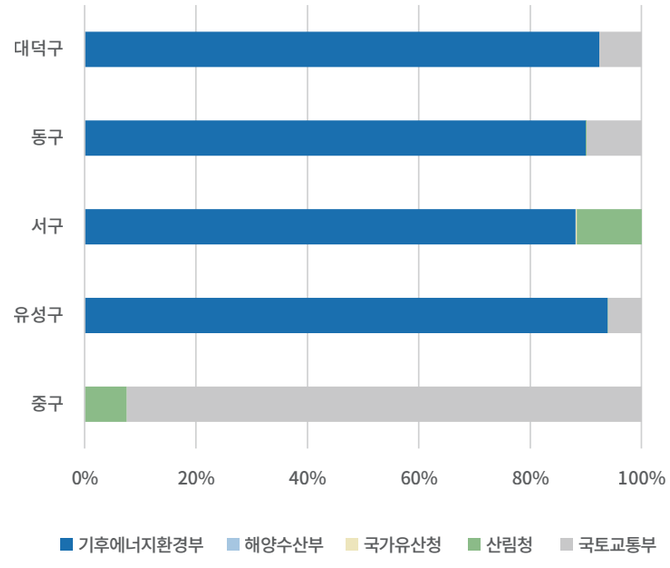


그림18. 대전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내에는 총 15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11.22%(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수원함양보호구역(4,582.44ha, 행정구역의 4.31%)이다. 울산광역시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3. 울산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	–
	도립공원	2,741.94	2.58
	군립공원	1,190.79	1.12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301.77	0.28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0.3	0.00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77.53	0.07
	습지보호지역(내륙)	18.72	0.02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468	0.44
	상수원보호구역	1,118.97	1.05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5,825.70	5.48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	–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69.12	0.07
	천연보호구역	–	–
	명승	68.85	0.06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136.62	0.13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23.5	0.77
	경관보호구역	81.27	0.08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4,582.44	4.31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5,487.84	5.16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691.83	0.65
	자연환경보전지역	4,350.87	4.09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5,041.98	4.74
계(A+B+C+D+E)		16,492.14	15.51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1,927.07	11.22
행정구역 총면적		106,324.09	100.00

그림19. 울산광역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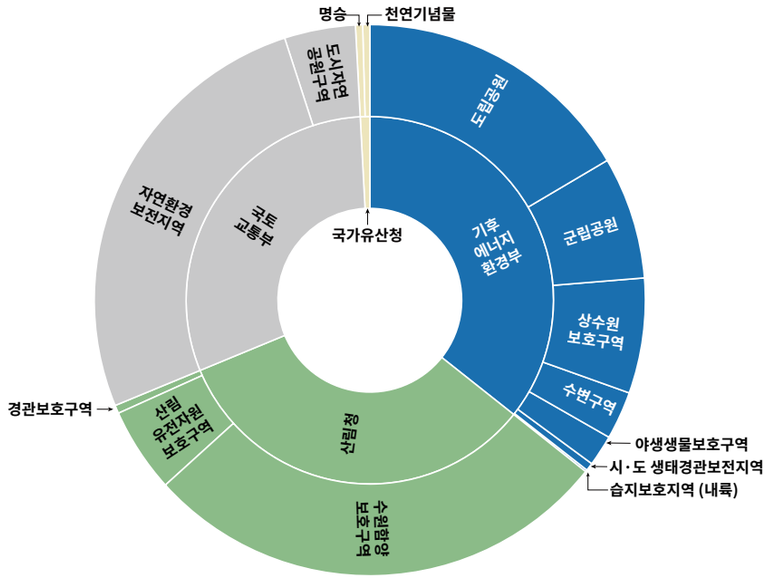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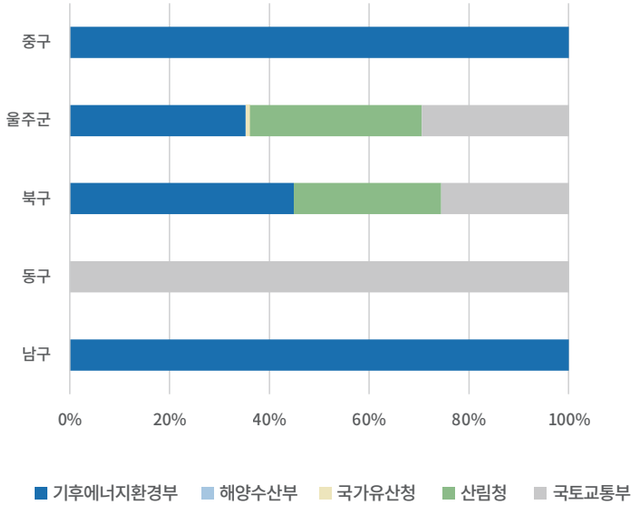


그림20.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는 총 7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0.76%(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247.86ha, 행정구역의 0.53%)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4. 세종특별자치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	–
	도립공원	184.68	0.40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24.21	0.05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	–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	–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205.83	0.44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	–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0.90	0.00
	천연보호구역	–	–
	명승	–	–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0.99	0.00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0.81	0.00
	경관보호구역	18.09	0.04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65.16	0.14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83.70	0.18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247.86	0.53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247.86	0.53
계(A+B+C+D+E)		538.38	1.16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355.05	0.76
행정구역 총면적		46,520.90	100.00

그림21. 세종특별자치시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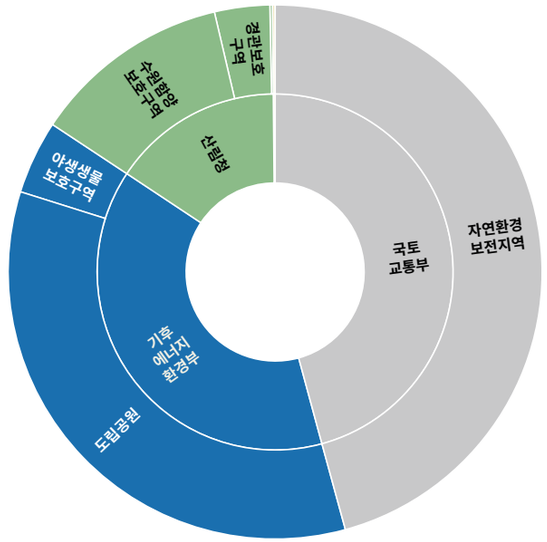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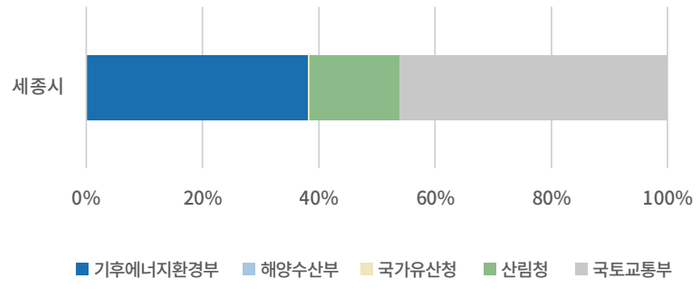


그림22.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9) 경기도

경기도 내에는 총 20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23.61%(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특별대책지역(171,659.63ha, 행정구역의 16.59%)이다. 경기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5. 경기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4,007.43	0.39
	도립공원	7,945.56	0.77
	군립공원	2,660.85	0.26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5,203.19	0.50
	특정도서	1.71	0.00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2,204.56	0.21
	습지보호지역(내륙)	4,887.36	0.47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14,879.25	1.44
	상수원보호구역	18,754.36	1.81
	특별대책지역	171,659.63	16.5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201,401.55	19.47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6.84	0.00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3,016.44	0.29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3,024.99	0.29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4,631.73	0.45
	천연보호구역	–	–
	명승	181.44	0.02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4,807.37	0.46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6,049.98	0.58
	경관보호구역	1,187.22	0.11
	재해방지보호구역	6.39	0.00
	수원함양보호구역	32,925.33	3.18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40,144.68	3.88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2,790.70	0.27
	자연환경보전지역	16,247.48	1.57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19,036.75	1.84
계(A+B+C+D+E)		268,415.34	25.95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244,228.61	23.61
행정구역 총면적		1,034,534.42	100.00

그림23. 경기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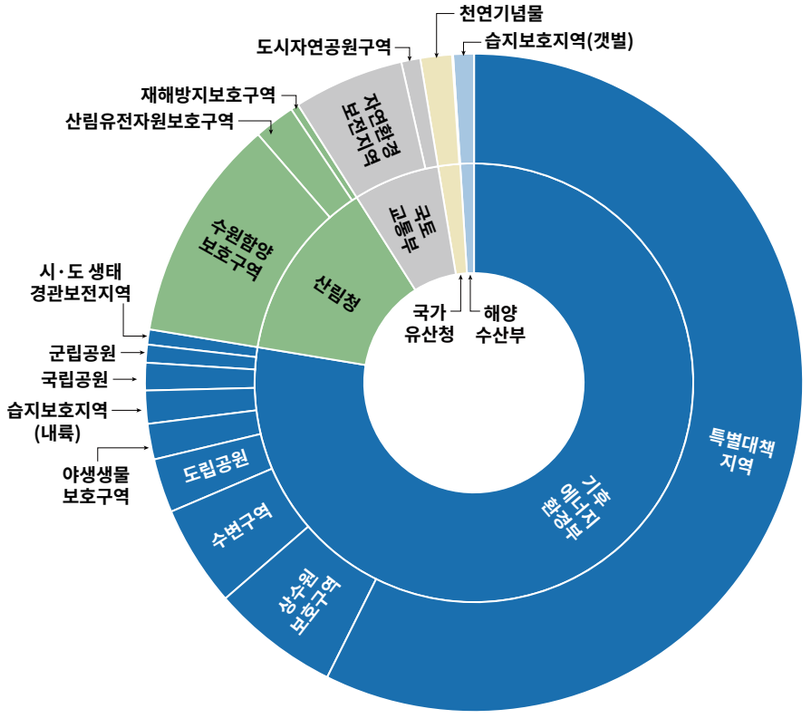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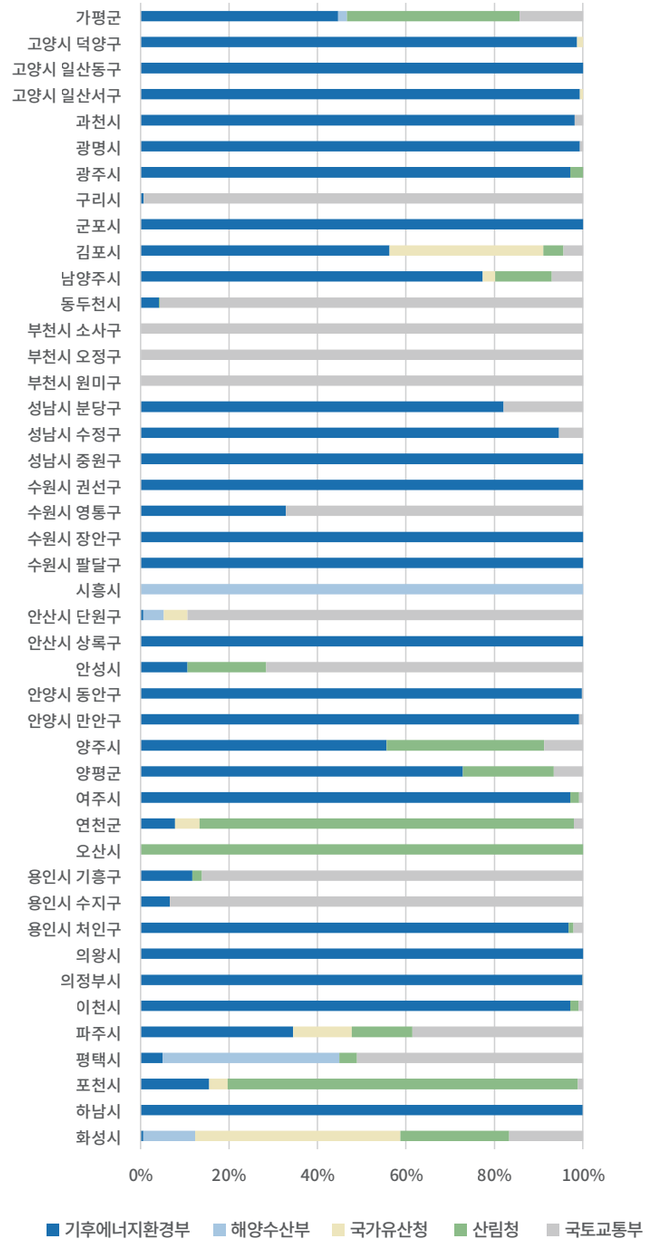


그림24.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22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26.94%(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152,242.20ha, 행정구역의 9.05%)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6. 강원특별자치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95,492.05	5.68
	도립공원	643.68	0.04
	군립공원	724.68	0.04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10,303.47	0.61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7,860.96	0.47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10.26	0.00
	습지보호지역(내륙)	616.57	0.04
	습지보호지역(시·도)	163.53	0.01
	수변구역	2,103.66	0.13
	상수원보호구역	7,205.94	0.43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18,946.34	7.07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0.13	0.00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11,615.67	0.69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11,613.78	0.69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1,645.47	0.10
	천연보호구역	32,870.88	1.95
	명승	4,932.36	0.29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38,553.66	2.29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134,200.35	7.9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31,287.77	7.81
	경관보호구역	672.69	0.04
	재해방지보호구역	4.05	0.00
	수원함양보호구역	137,976.48	8.20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373,434.39	22.20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399.15	0.02
	자연환경보전지역	152,242.20	9.05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152,641.71	9.07
계(A+B+C+D+E)		695,189.88	41.33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453,083.76	26.94
행정구역 총면적		1,682,030.18	100.00

그림25. 강원특별자치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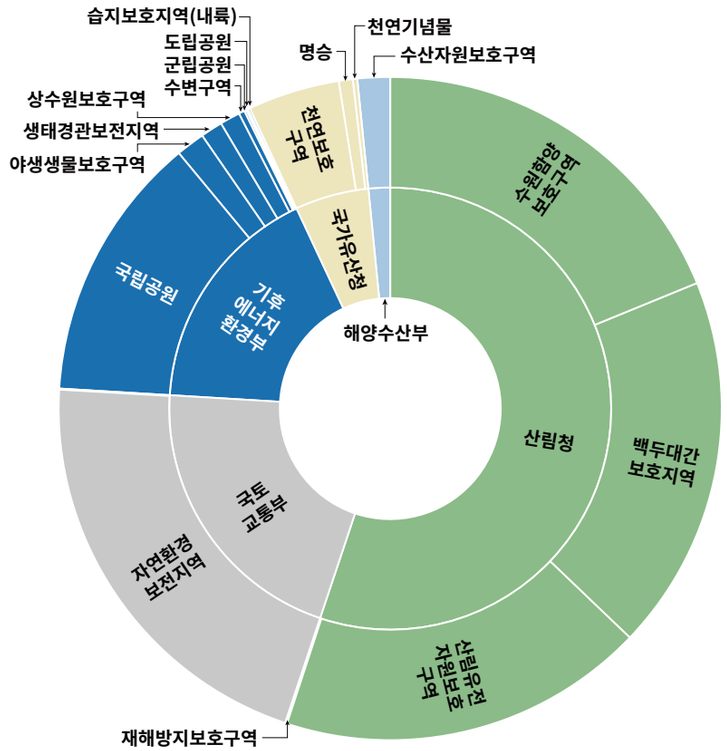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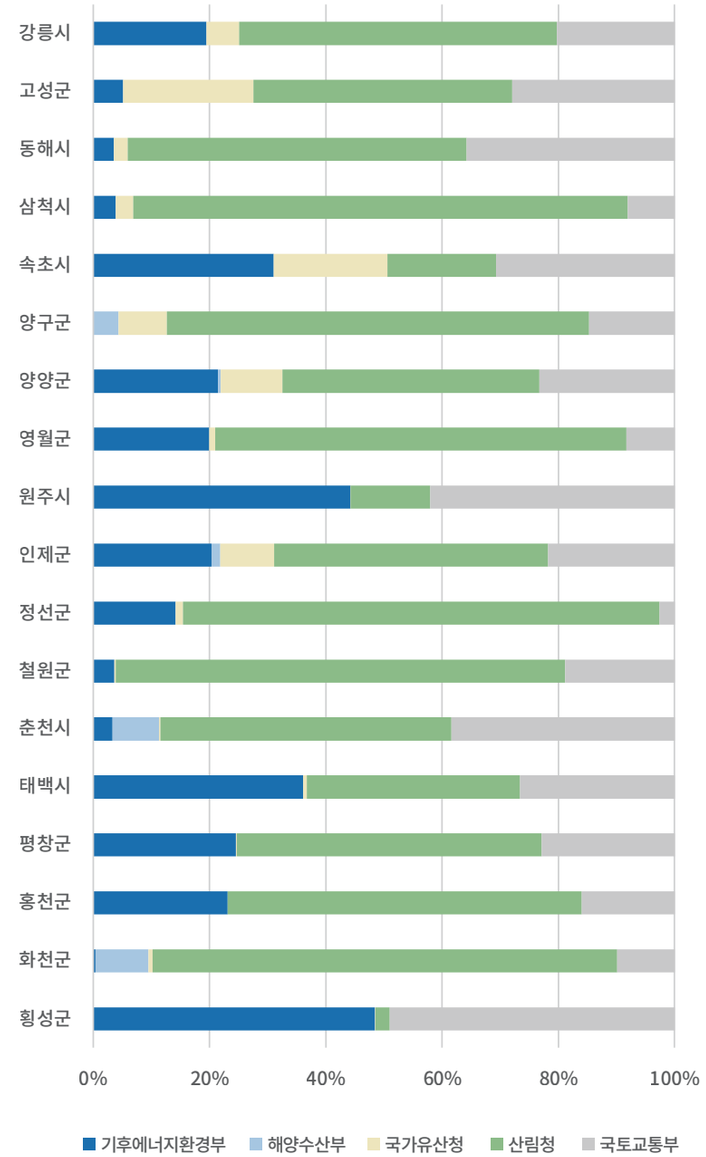


그림26.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1) 충청북도

충청북도 내에는 총 16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22.70%(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83,576.94ha, 행정구역의 11.27%)이다. 충청북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7. 충청북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58,346.64	7.87
	도립공원	0.37	0.00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19,657.33	2.65
	특정도서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92.62	0.01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20,391.84	2.75
	상수원보호구역	10,972.00	1.48
	특별대책지역	63,967.86	8.6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29,283.29	17.44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1,962.66	0.26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1,957.47	0.26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255.42	0.03
	천연보호구역	–	–
	명승	1,980.72	0.27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2,235.15	0.30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35,824.95	4.8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736.18	0.37
	경관보호구역	4.23	0.00
	재해방지보호구역	–	–
	수원함양보호구역	26,540.91	3.58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62,915.76	8.49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4,448.70	0.60
	자연환경보전지역	83,576.94	11.27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88,024.95	11.87
계(A+B+C+D+E)		284,416.62	38.36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68,309.72	22.70
행정구역 총면적		741,404.80	100.00

그림27. 충청북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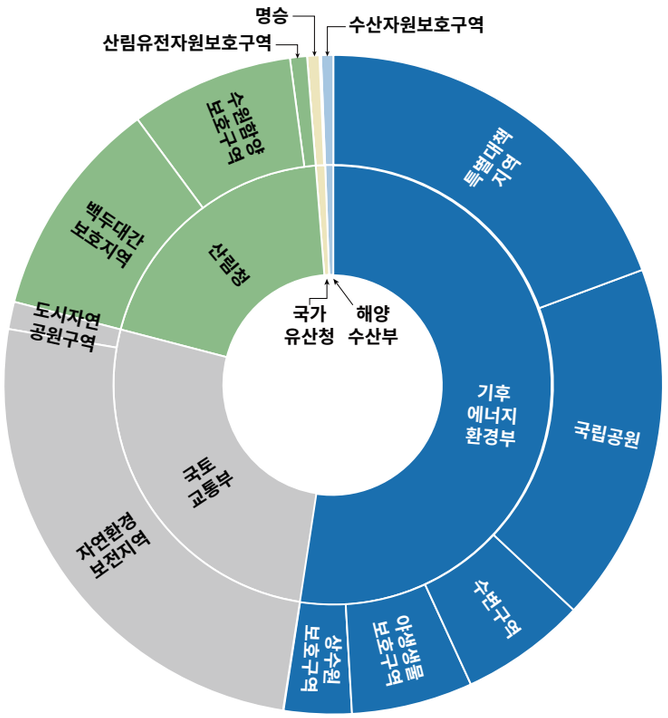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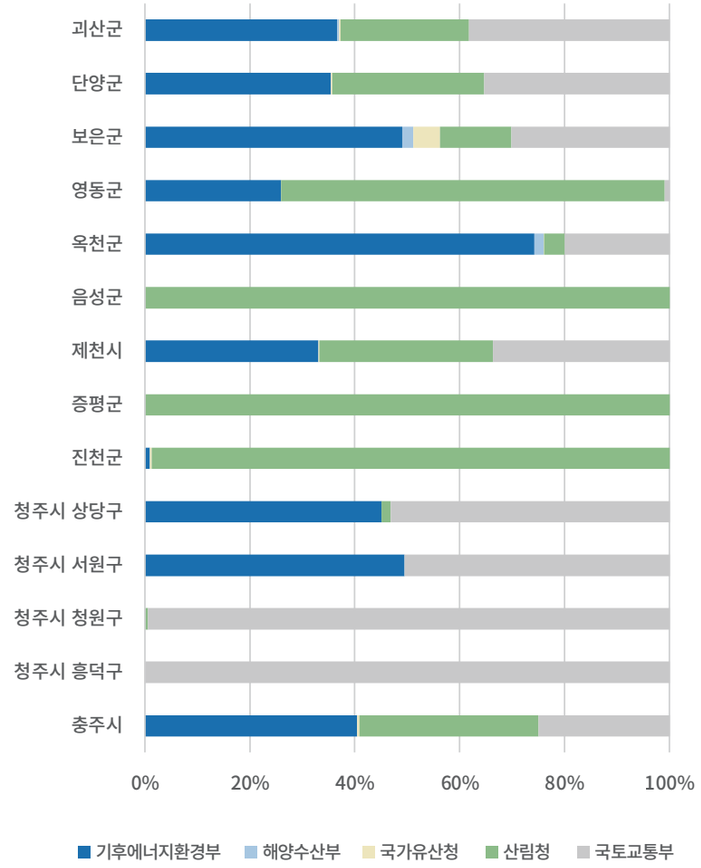


그림28. 충청북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2) 충청남도

충청남도 내에는 총 20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6.06%(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22,836.67ha, 행정구역의 2.76%)이다. 충청남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8. 충청남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8,672.13	1.05
	도립공원	7,547.26	0.91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8,689.34	1.05
	특정도서	147.96	0.02
	생태경관보전지역	12.69	0.00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6.57	0.00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2,671.02	0.32
	상수원보호구역	606.96	0.07
	특별대책지역	12.96	0.0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26,816.49	3.24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64.08	0.01
	해양보호구역	142.65	0.02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5,480.46	0.66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5,687.28	0.69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235.71	0.03
	천연보호구역	–	–
	명승	334.62	0.04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570.42	0.07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15.31	0.10
	경관보호구역	2,476.03	0.30
	재해방지보호구역	156.42	0.02
	수원함양보호구역	12,251.88	1.48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15,670.94	1.89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1,945.49	0.24
	자연환경보전지역	22,836.67	2.76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24,782.29	3.00
계(A+B+C+D+E)		73,527.42	8.89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50,088.24	6.06
행정구역 총면적		827,025.26	100.00

그림29. 충청남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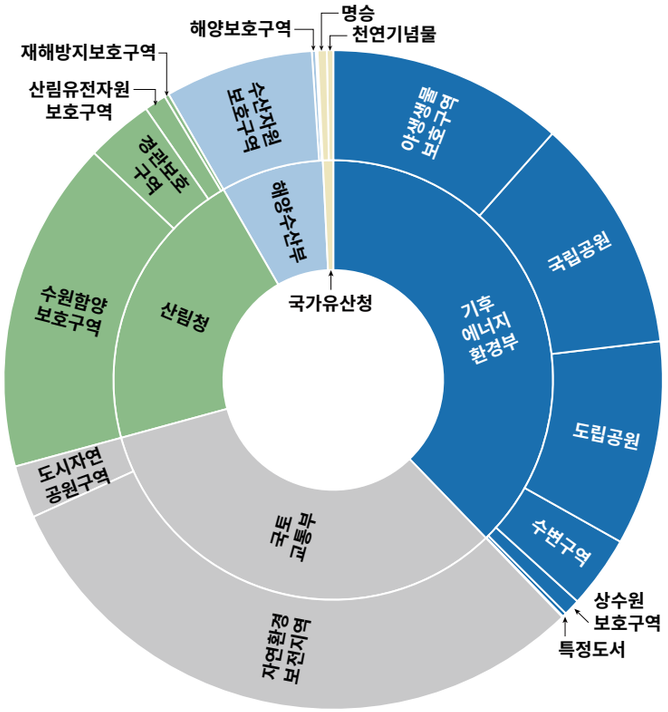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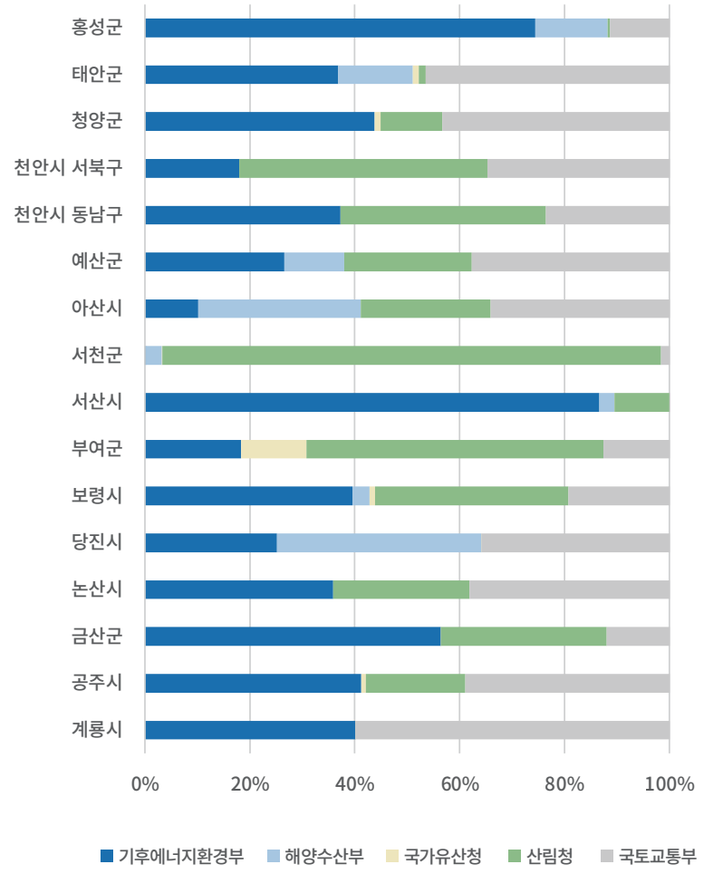


그림30.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3)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20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16.44%(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68,869.62ha, 행정구역의 8.45%)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19. 전북특별자치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48,264.21	5.92
	도립공원	14,170.95	1.74
	군립공원	2,213.55	0.27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13,564.18	1.66
	특정도서	57.87	0.01
	생태경관보전지역	2.25	0.00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311.85	0.04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16,065.45	1.97
	상수원보호구역	2,584.71	0.32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87,510.96	10.74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99.90	0.01
	해양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2,053.80	0.25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2,159.01	0.26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100.44	0.01
	천연보호구역	–	–
	명승	331.11	0.04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431.73	0.05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18,153.45	2.2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78.58	0.11
	경관보호구역	3,641.31	0.45
	재해방지보호구역	794.52	0.10
	수원함양보호구역	35,479.53	4.35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57,697.92	7.08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108.45	0.01
	자연환경보전지역	68,869.62	8.45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68,978.25	8.47
계(A+B+C+D+E)		216,777.87	26.60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33,955.46	16.44
행정구역 총면적		814,832.57	100.00

그림31. 전북특별자치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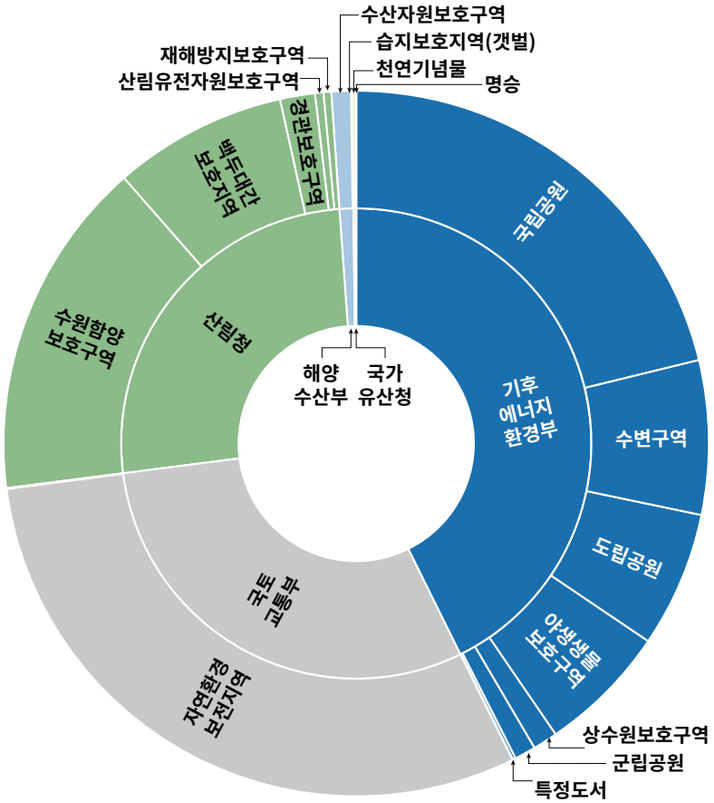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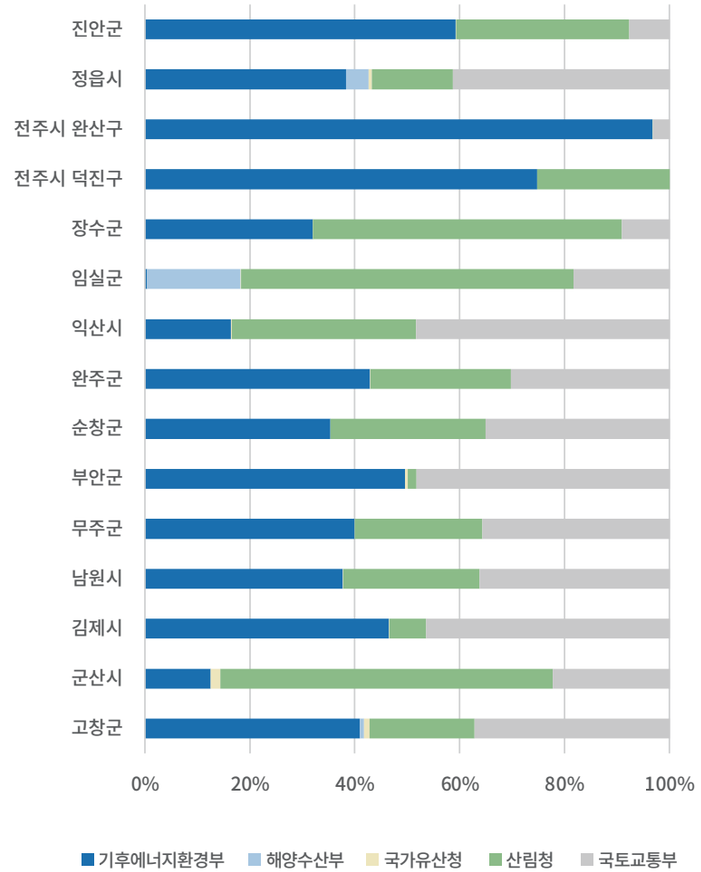


그림32.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4) 전라남도

전라남도 내에는 총 24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19.35%(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환경보전해역(99,898.56ha, 행정구역의 8.02%)이다. 전라남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20. 전라남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53,014.41	4.26
	도립공원	8,114.13	0.65
	군립공원	18.27	0.00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6,607.71	0.53
	특정도서	433.53	0.03
	생태경관보전지역	3,942.18	0.3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971.91	0.08
	습지보호지역(내륙)	972.90	0.08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29,724.22	2.39
	상수원보호구역	21,052.98	1.69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14,768.09	9.22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1,108.62	0.09
	해양보호구역	10.98	0.00
	환경보전해역	99,898.56	8.02
	수산자원보호구역	33,510.86	2.69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111,874.83	8.98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1,754.46	0.14
	천연보호구역	564.39	0.05
	명승	4,766.55	0.38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6,689.25	0.54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5,127.66	0.4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781.56	0.30
	경관보호구역	2,132.49	0.17
	재해방지보호구역	629.19	0.05
	수원함양보호구역	12,108.96	0.97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23,712.64	1.90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839.61	0.07
	자연환경보전지역	99,040.95	7.95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99,779.76	8.01
계(A+B+C+D+E)		356,824.57	28.66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240,884.64	19.35
행정구역 총면적		1,245,150.84	100.00

그림33. 전라남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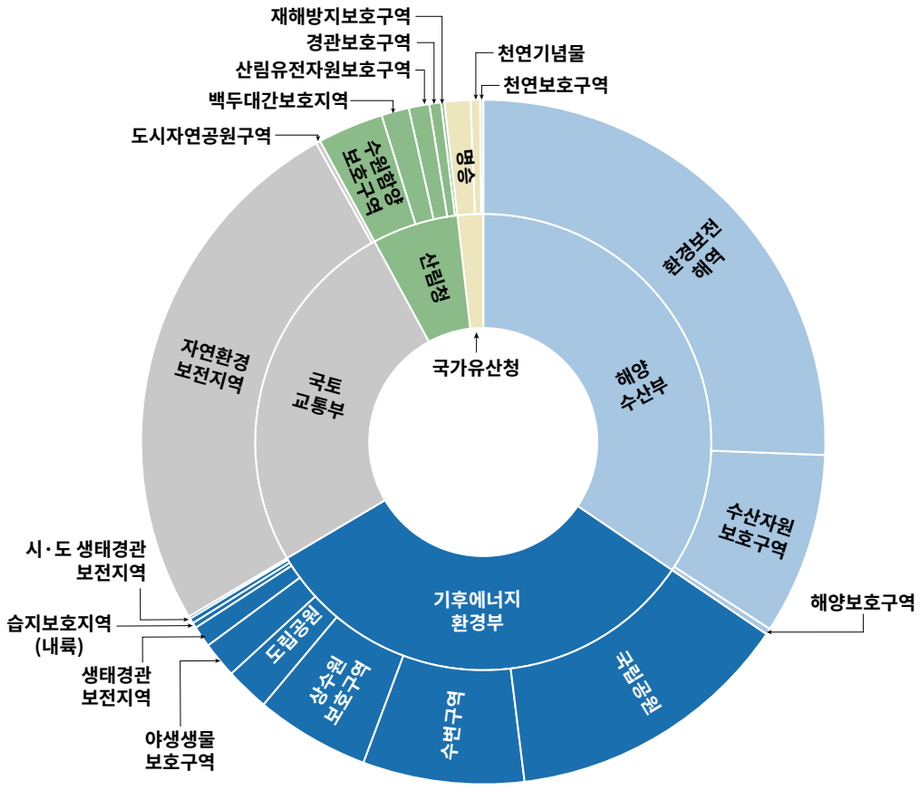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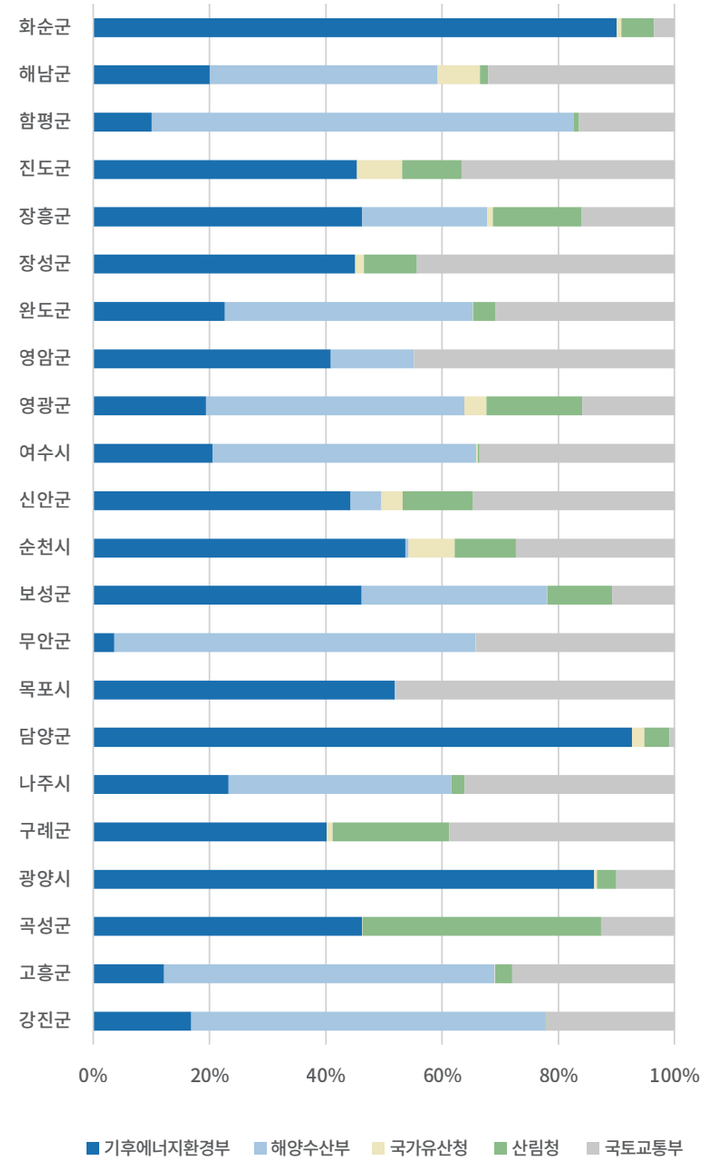


그림34.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5)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에는 총 23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12.67%(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111,287.52ha, 행정구역의 6.04%)이다. 경상북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21. 경상북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66,110.83	3.59
	도립공원	9,205.20	0.50
	군립공원	5,733.28	0.31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2,196.00	0.12
	특정도서	16.74	0.00
	생태경관보전지역	12,656.97	0.69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79.83	0.00
	습지보호지역(시·도)	0.01	0.00
	수변구역	20,536.83	1.11
	상수원보호구역	13,721.22	0.74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26,641.34	6.87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	–
	해양보호구역	23.60	0.00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4,554.63	0.25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4,570.30	0.25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2,756.70	0.15
	천연보호구역	17.28	0.00
	명승	4,011.84	0.22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6,780.87	0.37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48,211.74	2.6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5,074.80	1.90
	경관보호구역	6,765.59	0.37
	재해방지보호구역	818.64	0.04
	수원함양보호구역	20,605.68	1.12
	생활환경보호구역	10.26	0.00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103,845.96	5.64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216.36	0.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1,287.52	6.04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111,503.97	6.05
계(A+B+C+D+E)		353,342.44	19.18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233,355.87	12.67
행정구역 총면적		1,842,491.69	100.00

그림35. 경상북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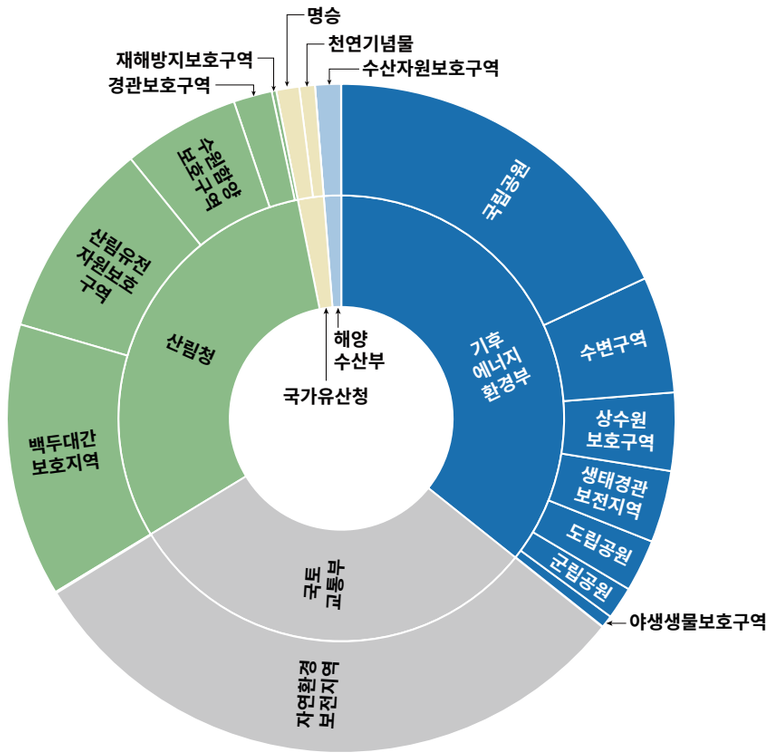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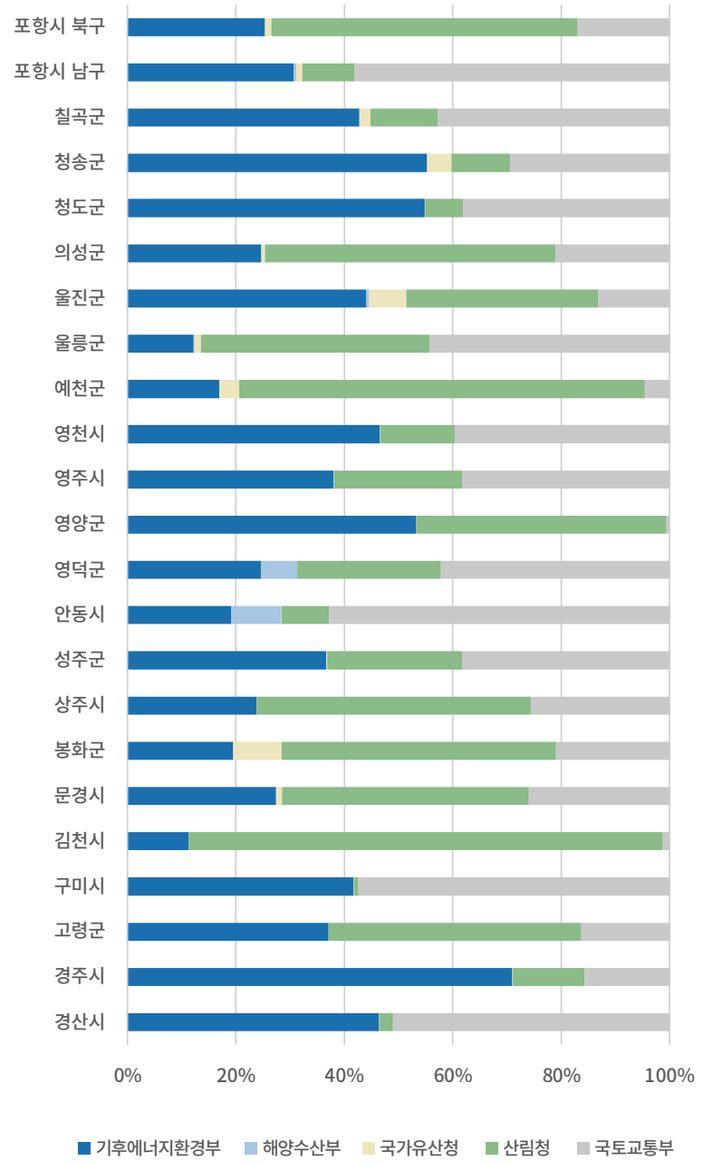


그림36. 경상북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6) 경상남도

경상남도 내에는 총 24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14.02%(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86,424.30ha, 행정구역의 8.18%)이다. 경상남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22. 경상남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48,704.67	4.61
	도립공원	9,683.28	0.92
	군립공원	9,664.83	0.91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2,658.15	0.25
	야생생물보호구역	30,661.20	2.90
	특정도서	122.49	0.01
	생태경관보전지역	33.93	0.00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1,215.54	0.12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11,945.70	1.13
	상수원보호구역	14,540.42	1.38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02,023.82	9.66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21.78	0.00
	해양보호구역	1.98	0.00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12,419.37	1.18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12,438.81	1.18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422.29	0.04
	천연보호구역	341.64	0.03
	명승	4,034.52	0.38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4,796.86	0.45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23,076.90	2.1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732.92	0.45
	경관보호구역	1,760.58	0.17
	재해방지보호구역	807.15	0.08
	수원함양보호구역	21,836.81	2.07
	생활환경보호구역	3.96	0.00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51,144.21	4.84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4,620.60	0.44
	자연환경보전지역	86,424.30	8.18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91,043.46	8.62
계(A+B+C+D+E)		261,447.16	24.75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148,118.49	14.02
행정구역 총면적		1,056,280.37	100.00

그림37. 경상남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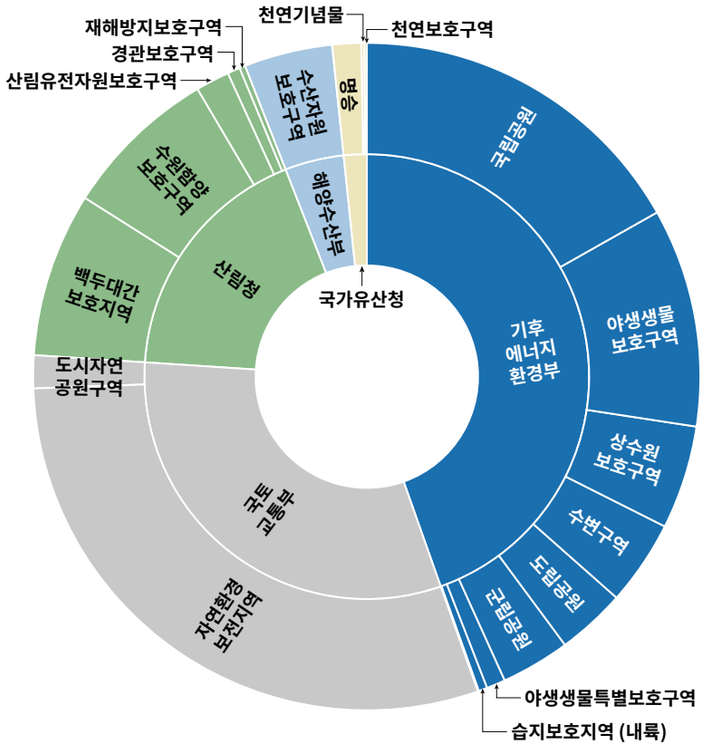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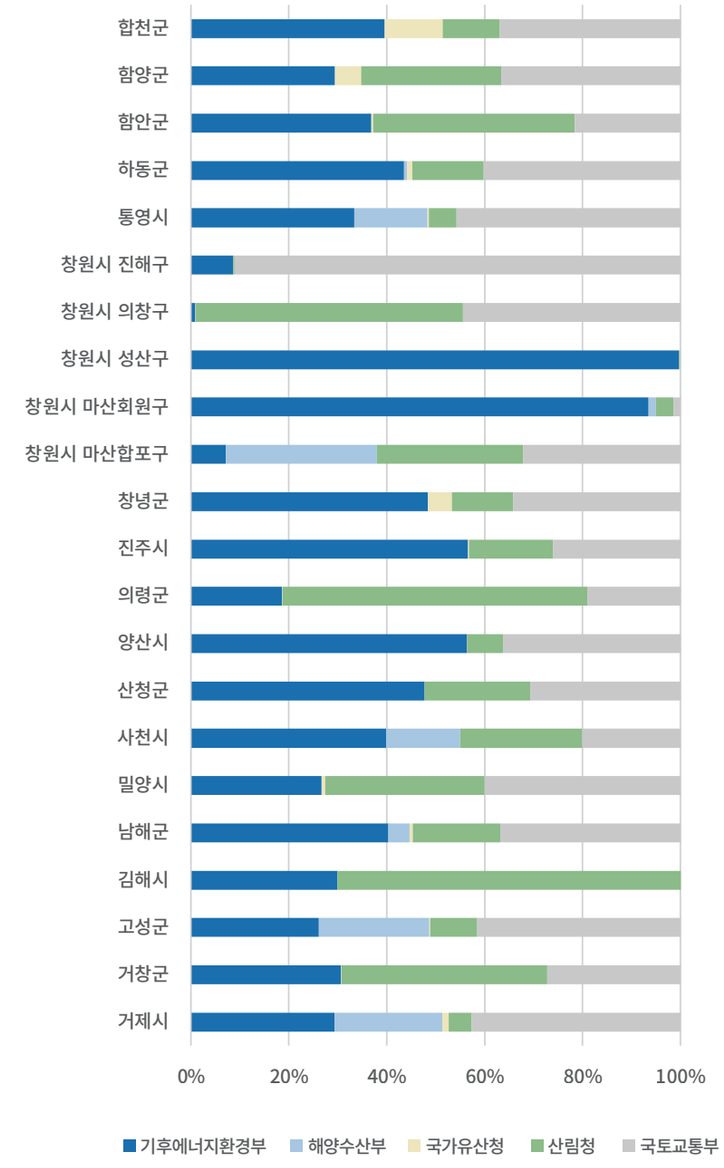


그림38. 경상남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13종류의 보호지역이 존재하며, 행정구역의 12.20%(중복 면적 제외)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자연환경보전지역(21,000.78ha, 행정구역의 11.25%)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23. 제주특별자치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및 면적 비율

주무부처	유형	육상 면적(ha)	비율(%)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립공원	15,355.89	8.23
	도립공원	653.85	0.35
	군립공원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	–
	특정도서	30.51	0.02
	생태경관보전지역	–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습지보호지역(내륙)	282.60	0.15
	습지보호지역(시·도)	–	–
	수변구역	–	–
	상수원보호구역	63.63	0.03
	특별대책지역	–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전체(A)	16,288.11	8.73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31.77	0.02
	해양보호구역	5.22	0.00
	환경보전해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해양수산부 보호지역 전체(B)	38.07	0.02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993.06	0.53
	천연보호구역	9,362.52	5.02
	명승	312.21	0.17
	국가유산청 보호지역 전체(C)	10,390.50	5.57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366.92	0.73
	경관보호구역	–	–
	재해방지보호구역	74.25	0.04
	수원함양보호구역	–	–
	생활환경보호구역	–	–
	산림청 보호지역 전체(D)	1,441.89	0.77
국토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21,000.78	11.25
	국토교통부 보호지역 전체(E)	21,000.78	11.25
계(A+B+C+D+E)		49,159.35	26.34
총면적(A+B+C+D+E – 중복 면적)		22,763.61	12.20
행정구역 총면적		186,616.04	100.00

그림39. 제주특별자치도 육상 보호지역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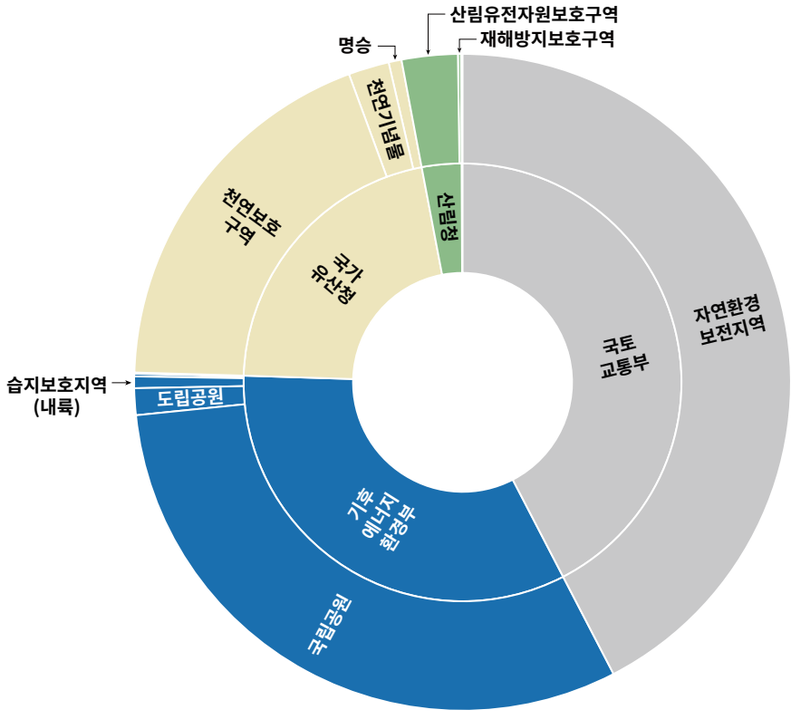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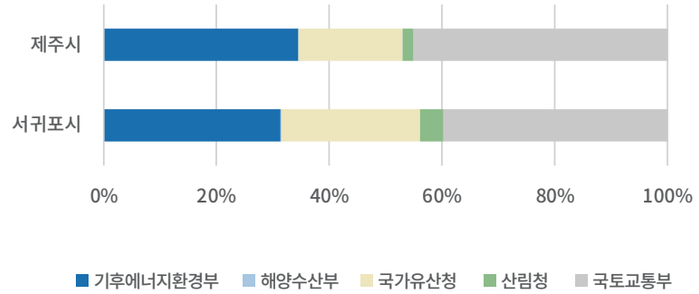


그림40.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의 주무부처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PART 3

제언

제언

1. 지역별 불균형 완화 및 지역 맥락적 접근 강화

우리나라 육상 행정구역 면적 중 육상 보호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17.52%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26.94%), 경기도(23.61%), 충청북도(22.70%) 등은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0.76%), 인천광역시(2.92%), 충청남도(6.06%) 등은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각 광역지자체의 자연·지리적 환경, 산업 구조, 인구 밀도, 개발 압력의 차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30x30과 같은 보호지역 지정 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생물다양성 이해와 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지역 발굴 및 지정에 관한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은 강력한 규제를 수반한다. 이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보호지역 발굴 및 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 보호지역 지정 해제에 대한 주민 요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호지역의 발굴 및 확대 지정을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수단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 또한 각 지역의 경제 및 인구 구조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보호지역 관리의 질적 향상

우리나라 육상 보호지역은 유형별로 자연환경보전지역 673,945.95ha(행정구역 면적 대비 6.68%, 보호지역의 38.15%), 국립공원 412,876.05ha(행정구역 면적 대비 4.09%, 보호지역의 23.37%), 수원함양보호구역 305,280.56ha(행정구역 면적 대비 3.03%, 보호지역의 17.28%) 등 순으로 면적이 넓다.

이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도시·군기본계획, 환경계획 등 관련 법정 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나 계획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은 보호 강도가 높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에 적절한 형태의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질적 관리를 향상해야 한다.

3. 지정·관리 부처의 역할

1)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

중앙정부 내 각 부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중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KDPA에 등재된 보호지역의 일관되지 않은 관리 수준을 정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2) 광역지자체의 역할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을 비롯한 가치를 기반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보호지역이 행정 경계에 따라 명확히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해당되는 보호지역이 있거나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중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보호지역에 따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촘촘하게 관리되는 곳도 있지만, 제도적 한계나 주무부처·지자체의 역량 등 다양한 이유로 미흡하게 관리되는 곳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이다. 광역지자체는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보전과 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선별하고 보호지역 지정·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속하는 보호지역의 관리를 위해 중재·지원·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본 경험이 있는 광역지자체는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세 곳에 불과하다.

3) 기초지자체의 역할

보호지역은 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지정하지만, 기초지자체 역시 보호지역의 지정 권한이 있다.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시 단위 이상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여 작성되는 지도형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를 활용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경제적 지원정책 등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호지역의 관리적 측면에서도 관리 계획 수립, 모니터링, 시민과학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보호지역은 기초지자체에 있으며, 이곳의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지역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지역 대상지 발굴, 생태계서비스 평가, 자연과 도시의 상생방안 등을 환경계획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시민사회의 역할

KDPA에 보고된 우리나라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은 총 18개이며 주무부처는 5개의 부 및 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청장, 광역지자체의 장은 물론 기초지자체의 구청장까지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활동가가 자신이 주로 소통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위상의 보호지역을 제안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지역 제안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법률별로 다양하므로 해당되는 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구체적인 공간상의 지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자연도, 토지피복유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다양한 공간자료와 야생생물 조사기록 등을 함께 제시한다면, 보호지역 지정을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표24. 보호지역별 근거법령과 지정권자

주무부처	근거 법령	유형	지정권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	광역지자체의 장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	기초지자체의 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야생생물보호구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장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광역지자체의 장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내륙)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습지보호지역(시·도)	광역지자체의 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갯벌)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보전해역	해양수산부 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청 청장
		천연보호구역	국가유산청 청장
		명승	국가유산청 청장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청 청장
	「산림보호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 청장 및 광역지자체의 장
		경관보호구역	산림청 청장 및 광역지자체의 장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청 청장 및 광역지자체의 장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청 청장 및 광역지자체의 장
		생활환경보호구역	산림청 청장 및 광역지자체의 장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광역지자체의 장 및 대도시의 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지자체의 장 및 대도시의 장

*[비고]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참고문헌

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시행 2024.5.17.)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산림보호법(법률 제20546호, 2024.12.3., 일부개정, 시행 2025.6.4.)
- 습지보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수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자연공원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18호, 2025.4.8., 일부개정, 시행 2025.10.9.)
-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1호, 2024.2.6., 타법개정, 시행 2025.8.7.)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0호, 2024.1.2., 타법개정, 시행 2025.1.3.)
-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시행 2025.10.1.)

지자체 전략 보고서

- 〈제2차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2021~2025)〉(강원도, 2021.)
- 〈제1차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2025~2029)〉(경기도, 2024.)

웹사이트 및 온라인 자료

- 한국보호지역 통합DB 관리 시스템: KDPA. (2016) 국가보호지역 통합 DB 관리개선 및 시스템 구축 현황 사용자 지침서 ver1.0. 한국보호지역 통합DB 관리 시스템: KDPA. (2025.10.30. 방문) http://www.kdpa.kr/
- 한국보호지역 통합DB 관리 시스템: KDPA. (2024) 2024년 보호지역 SHP 다운로드. 한국보호지역 통합DB 관리 시스템: KDPA. (2024.12.30. 방문) http://www.kdpa.kr/
- 국립생물자원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현황. 국립생물자원관. (2025.11.04. 방문) 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797&contentKey=182
- 통계청. (2024) 센서스용 행정구역 경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2025.10.05. 방문) https://sgis.kostat.go.kr

2025-3호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이슈페이퍼

발 행 인 장재연
발 행 처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발 행 일 1판 1쇄 2025. 12. 17.
기 획 신재은 |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소장
박 한 |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최지원 |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분 석 최지원 |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주 소 (06737)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9-26 도담빌딩 3층
전 화 02-6925-4890
팩 스 02-6925-4891
이 메 일 institute@koreashe.org
디 자 인 이야기올제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